

제428회국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8월18일(월)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소위원장 선출의 건
-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 보건복지부 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질병관리청 소관
-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 보건복지부 소관
 - 질병관리청 소관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950)
-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47)
-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58)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62)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24)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71)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86)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76)
-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29)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75)
-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83)
-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89)
- 경계선지능인 자립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29)

17. 경계선지능인 지원법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04)
18.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92)
19.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9096)
20.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59)
2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95)
2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99)
2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12)
2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82)
2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62)
2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04)
2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82)
2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02)
2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00)
3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02)
3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40)
3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21)
3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37)
34.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82)
3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20)
3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11)
3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33)
3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02)
39.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10)
4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26)
4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08)
4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25)
4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83)
44.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65)
4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53)
4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91)
4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04)
4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13)
4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27)
5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76)
5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65)
5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67)
5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56)

5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34)
5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60)
56.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86)
57.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90)
58.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66)
59.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39)
60.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57)
61.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90)
6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9091)
63.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53)
64.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02)
6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51)
6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68)
6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80)
6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08)
6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98)
7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80)
7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05)
7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88)
7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93)
7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21)
7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83)
7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44)
7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56)
7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74)
7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77)
8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54)
8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49)
8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85)
8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84)
8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89)
8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87)
8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29)
87.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41)
88.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9092)
89.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15)

90. 돌봄기본법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78)
9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03)
9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68)
9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56)
94.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남인순 의원·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1134)
9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17)
96.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22)
9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45)
98.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43)
99.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17)
10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48)
10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84)
102.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60)
103.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90)
104.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81)
105.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03)
106.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78)
107.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35)
108.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22)
109.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41)
110.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59)
11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97)
11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449)
11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730)
11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1256)
115.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87)
116.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57)
117.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62)
118.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27)
119.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18)
120.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562)
12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69)

122.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64)
123.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76)
124.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25)
125.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028)
12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25)
12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81)
128.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560)
129.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51)
130.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00)
131. 아동기본법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59)
13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26)
13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83)
13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44)
13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84)
13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9099)
13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13)
13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08)
13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38)
14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97)
14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15)
14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53)
14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45)
14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91)
145.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81)
146.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49)
147.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13)
148.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28)
149.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31)
15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28)
15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62)
15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66)
15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527)
15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11)
15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59)

156.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99)
157.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561)
158.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57)
159.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11)
16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26)
16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20)
16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24)
16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9)
16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55)
16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91)
16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20)
16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95)
16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59)
16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54)
17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10)
171.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90)
172.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47)
173.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71)
174.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85)
175.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61)
176.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58)
177.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63)
17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30)
17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27)
18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47)
18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33)
18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09)
18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21)
18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51)
18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26)
18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41)
18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03)

18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18)
18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92)
19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55)
191.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599)
192.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12)
19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9098)
19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932)
19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29)
19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60)
197.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40)
198.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11)
199.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905)
200.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1053)
20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560)
20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579)
20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089)
20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46)
20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12)
20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50)
20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67)
20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47)
20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94)
21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01)
21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75)
21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38)
21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51)
21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465)
21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999)

21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71)
217.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67)
218.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64)
219.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85)
22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03)
22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9)
22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52)
22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87)
22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55)
22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37)
22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29)
22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3)
22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64)
22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60)
230. 제약바이오헬스산업 진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75)
231.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16)
232.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02)
233.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09)
234.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87)
235.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08)
236.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41)

237.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529)
238.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12)
239.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45)
240.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17)
241.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43)
242.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17)
243.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29)
244. 치매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99)
24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047)
246.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85)
247.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65)
248.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54)
249.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98)
250.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30)
251. 가족 동의없는 장기 기증 허용 법안 진행의 반대에 관한 청원(곽인혜 외 50,444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59)
252.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폐지에 관한 청원(김현아 외 53,219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55)
253. 희귀질환·소아암, 난치 안과 질환 등 환자를 위한 세포·유전자치료의 인프라 개선 및 제도 개정에 관한 청원(이주혁 외 51,956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82)
254. 업무보고
- 가. 보건복지부
 -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 다. 질병관리청
 - 라. 국민건강보험공단
 - 마. 국민연금공단
 - 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정된 안건

1. 소위원회 선출의 건 19
2.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19
 - 가. 보건복지부 소관
 -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다. 질병관리청 소관

3.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19
가. 보건복지부 소관	
나. 질병관리청 소관	
4.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950)	19
5.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47)	19
6.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58)	19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62)	19
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24)	19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71)	20
1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86)	20
1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76)	20
12.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29)	20
1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75)	20
14.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83)	20
15.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89)	20
16. 경계선지능인 자립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29)	20
17. 경계선지능인 지원법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04)	20
18.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92)	20
19.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9096)	20
20.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59)	20
2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95)	20
2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99)	20
2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12)	20
2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82)	20
2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62)	20
2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04)	20
2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82)	20
2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02)	20
2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00)	20

3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02)	20
3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40)	20
3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21)	20
3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37)	20
34.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82)	20
3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20)	20
3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11)	20
3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33)	20
3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02)	20
39.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10)	20
4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26)	20
4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08)	20
4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25)	20
4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83)	21
44.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65)	21
4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53)	21
4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91)	21
4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04)	21
4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13)	21
4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27)	21
5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76)	21
5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65)	21
5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67)	21
5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56)	21
5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34)	21
5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60)	21
56.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86)	21
57.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90)	21
58.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66)	21
59.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39)	21
60.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57)	21
61.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90)	21
6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9091)	21
63.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53)	21
64.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02)	21
6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51)	21
6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68)	21
6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80)	21
6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08)	21
6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98)	21
7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80)	21
7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05)	21
7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88)	21
7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93)	21
7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21)	21
7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83)	21
7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44)	21
7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56)	21
7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74) ..	22
7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77) ..	22
8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54) ..	22
8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49) ..	22
8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85) ..	22
8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84) ..	22
8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89) ..	22
8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87) ..	22
8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29) ..	22
87.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41) ..	22
88.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9092)	22
89.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15)	22
90. 돌봄기본법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78)	22
9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03)	22
9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68)	22
9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56)	22
94.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남인순 의원·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1134)	22
9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17)	22

96.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22)	22
9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45)	22
98.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43)	22
99.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17)	22
10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48)	22
10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84)	22
102.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60)	22
103.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90)	22
104.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81)	22
105.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03)	22
106.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78) ..	22
107.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35) ..	22
108.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22) ..	22
109.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41) ..	22
110.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59)	22
11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97) ..	22
11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449)	22
11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730)	23
11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1256)	23
115.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87)	23
116.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57)	23
117.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62)	23
118.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27)	23
119.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18)	23
120.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562) ..	23
12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69)	23
122.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364)	23
123.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76)	23

124.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25)	23
125.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028)	23
12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25)	23
12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81)	23
128.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560)	23
129.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51)	23
130.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00)	23
131. 아동기본법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59)	23
13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26)	23
13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83)	23
13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44)	23
13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84)	23
13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9099)	23
13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13)	23
13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08)	23
13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38)	23
14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97)	23
14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15)	23
14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53)	23
14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45)	24
14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91)	24
145.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81)	24
146.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49)	24
147.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13)	24
148.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28)	24
149.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31)	24
15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28)	24
15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62)	24
15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66)	24
15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527)	24
15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11)	24
15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59)	24
156.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99)	24
157.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561)	24
158.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57)	24

159.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11)	24
16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26)	24
16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20)	24
16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24)	24
16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9)	24
16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55)	24
16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91)	24
16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20)	24
16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95)	24
16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59)	24
16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54)	24
17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10)	24
171.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590)	24
172.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847)	24
173.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671)	24
174.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285)	24
175.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61)	24
176.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58)	25
177.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63)	25
17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30)	25
17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27)	25
18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47)	25
18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33)	25
18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09)	25
18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21)	25
18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51)	25
18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26)	25
18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41)	25
18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03)	25
18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18)	25
18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92)	25
19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55)	25
191.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599)	25
192.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12)	25
19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9098)	25
19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32)	25
19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29) ..	25
19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60) ..	25
197.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40) ..	25
198.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11) ..	25
199.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05)	25
200.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53)	25
20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60)	25
20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79)	25
20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89)	25
20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46)	25
20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12)	25
20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50)	25
20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67)	26
20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47)	26
20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94)	26
21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01)	26
21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75)	26
21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38)	26
21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51)	26
21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65)	26
21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99)	26
21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71)	26
217.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67)	26

218.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764)	26
219.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085)	26
22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03)	26
22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9)	26
22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52)	26
22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87)	26
22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55)	26
22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37)	26
22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29)	26
22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3)	26
22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64)	26
22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60)	26
230. 제약바이오헬스산업 진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75)	26
231.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16)	27
232.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02)	27
233.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09)	27
234.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87)	27
235.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08)	27
236.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41)	27
237.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529)	27
238.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12)	27
239.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45)	27
240.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17)	27
241.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43)	27
242.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17)	27
243.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29)	27
244. 치매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99)	27
24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047)	27
246.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85)	27
247.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65)	27
248.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54)	27
249.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98)	27
250.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30)	27
251. 가족 동의없는 장기 기증 허용 법안 진행의 반대에 관한 청원(곽인혜 외 50,444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59)	27
252.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폐지에 관한 청원(김현아 외 53,219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55)	27
253. 희귀질환·소아암, 난치 안과 질환 등 환자를 위한 세포·유전자치료의 인프라 개선 및 제도 개정에 관한 청원(이주혁 외 51,956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82)	27
254. 업무보고	36
가. 보건복지부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다. 질병관리청	
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마. 국민연금공단	
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5시07분 개의)

○위원장 박주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소위원장 선출의 건을 처리하고 2024회계연도 결산과 법률안을 상정하며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 준비를 위하여 결산 관련 서면질의는 산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라는 점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위원 개선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14일 자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를 사임하시고 윤호중 위원님께서 새로 보임하셨습니다.

윤호중 위원님이 원래 인사를 하셔야 되는데 안 계시네요.
국회사무처 인사 발령으로 우리 위원회에 새롭게 근무하게 된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 입법조사관님이십니다.

오현승 입법조사관님이십니다.

(인사)

환영하고요, 죄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소위원장 선출의 건

○위원장 박주민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작년 7월 소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전반기 1년 경과 후에 법안심사제1소위원장과 법안심사제2소위원장은 상호 교대하기로 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사 위원 개선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은 김미애 위원님, 법안심사제2소위원장은 이수진 위원님,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은 서영석 위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면 좀 재미있을 것 같은데 이의가 없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 개선을 포함한 소위원회 구성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2.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가. 보건복지부 소관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다. 질병관리청 소관

3.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가. 보건복지부 소관

나. 질병관리청 소관

4.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950)

5.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47)

6.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58)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62)

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24)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71)
1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86)
1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76)
12.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29)
1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75)
14.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83)
15.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89)
16. **경계선지능인 자립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29)
17. **경계선지능인 지원법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04)
18.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92)
19.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9096)
20.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59)
2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95)
2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99)
2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12)
2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82)
2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62)
2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04)
2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82)
2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02)
2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00)
3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02)
3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40)
3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21)
3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37)
34.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82)
3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20)
3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11)
3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33)
3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02)
39.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10)
4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26)
4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08)
4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25)

4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83)
44.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65)
4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53)
4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91)
4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04)
4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13)
4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27)
5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76)
5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65)
5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67)
5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56)
5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34)
5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60)
56.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86)
57.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90)
58.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66)
59.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39)
60.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57)
61.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90)
6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9091)
63.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53)
64.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02)
6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51)
6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68)
6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80)
6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08)
6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98)
7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80)
7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05)
7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88)
7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93)
7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21)
7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83)
7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44)
7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56)

7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74)
7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77)
8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54)
8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49)
8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85)
8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84)
8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89)
8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87)
8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29)
87.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41)
88.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9092)
89.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15)
90. 돌봄기본법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78)
9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03)
9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68)
9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56)
94.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남인순 의원·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34)
9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17)
96.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22)
9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45)
98.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43)
99.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17)
10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48)
10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84)
102.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60)
103.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90)
104.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81)
105.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03)
106.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78)
107.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35)
108.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22)
109.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41)
110.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59)
11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97)
11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449)

11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730)
11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256)
115.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87)
116.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57)
117.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62)
118.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27)
119.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18)
120.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562)
12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69)
122.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364)
123.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76)
124.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25)
125.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028)
12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25)
12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81)
128.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560)
129.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51)
130.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00)
131. 아동기본법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59)
13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26)
13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83)
13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44)
13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84)
13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9099)
13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13)
13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08)
13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38)
14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97)
14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15)
14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53)

14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45)
14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91)
145.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81)
146.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49)
147.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13)
148.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28)
149.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31)
15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28)
15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62)
15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66)
15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527)
15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11)
15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59)
156.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99)
157.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561)
158.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57)
159.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11)
16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26)
16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20)
16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24)
16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9)
16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55)
16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91)
16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20)
16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95)
16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59)
16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54)
17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10)
171.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90)
172.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47)
173.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71)
174.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85)
175.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61)

176.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58)
177.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63)
17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30)
17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27)
18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47)
18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33)
18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09)
18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21)
18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51)
18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26)
18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41)
18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03)
18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18)
18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92)
19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55)
191.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99)
192.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12)
19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9098)
19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32)
19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29)
19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60)
197.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40)
198.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11)
199.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05)
200.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53)
20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60)
20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79)
20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89)
20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46)
20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12)
20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50)

20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67)
20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47)
20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94)
21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01)
21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75)
21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38)
21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51)
21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65)
21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99)
21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71)
217.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67)
218.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64)
219.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85)
22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03)
22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9)
22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52)
22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87)
22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55)
22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37)
22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29)
22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3)
22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64)
22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60)
230. 제약바이오헬스산업 진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75)

231.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16)
232.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02)
233.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09)
234.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87)
235.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08)
236.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41)
237.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529)
238.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12)
239.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45)
240.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17)
241.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43)
242.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17)
243.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29)
244. **치매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99)
24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047)
246.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85)
247.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65)
248.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54)
249.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98)
250.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30)
251. **가족 동의없는 장기 기증 허용 법안 진행의 반대에 관한 청원**(곽인혜 외 50,444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59)
252.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폐지에 관한 청원**(김현아 외 53,219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55)
253. **희귀질환·소아암, 난치 안과 질환 등 환자를 위한 세포·유전자치료의 인프라 개선 및 제도 개정에 관한 청원**(이주혁 외 51,956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82)

(15시09분)

○위원장 박주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부터 의사일정 제253항 희귀질환·소아암, 난치 안과 질환 등 환자를 위한 세포·유전자치료의 인프라 개선 및 제도 개정에 관한 청원까지 결산 및 예비

비지출 승인의 건과 247건의 법률안 및 3건의 청원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의 상세한 내용은 좌석의 노트북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4항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김성희 의원님께서 직접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의원**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경기도 고양특례시 출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성희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사업은 국민의 노후와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자 1988년에 도입된 사회보험입니다. 2025년 4월 기준으로 해서 가입자가 2178만 명, 수급자가 734만 명에 이르고요. 24년 한 해 수급자 연금수급액이 43조 원에 달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복지정책 중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단지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서 국민연금공단을 설립해 운영 업무를 위탁하고 있지만 국민연금사업은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복지 책무를 이행하는 명백한 국가사무입니다. 우리 국민연금법 또한 국민연금사업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아 주관하는 사무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국민연금의 관리운영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제도가 처음 시행되었던 1988년부터 91년까지는 보건복지부가 연금기금의 관리운영비 전액을 지원했지만 점차 지원 비율이 감소했고 지금은 고작 100억 원 정도만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2025년 기준 기금의 관리운영비가 5844억 원에 달하는데 고작 1.7%를 국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5700여억 원은 기금에서 충당해야 합니다.

국가가 마땅히 수행해야 할 복지 책무를 국민연금이 대신하고 있는데 그 운영 비용은 알아서 부담하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결국 그 부담은 모두 연금 가입자에게 지우고 있는 꼴입니다.

이에 국민연금관리공단 관리운영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2071년까지 관리운영비로 투입될 111조 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를 연평균 5.5%로 재투자한다면 2071년 기준으로 미래 가치 303조 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연금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작은 발걸음입니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연금 가입자들에게 무책임하게 전가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잘 살펴 주시어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90항 돌봄기본법안에 대해서 정춘생 의원님께서 직접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생 의원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입니다.

우선 제가 대표발의한 돌봄기본법안에 대해 제안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인간은 생애 전반에 걸쳐 돌봄이 필요한 시기를 겪으며 이는 인간 존재의 필수적 조건이자 보편적 삶의 모습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돌봄을 모든 사람들의 권리로 인정하는가? 지금 한국 사회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충분한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가? 지금 한국 사회는 돌봄 노동자들에게 돌봄의 가치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있는가? 지금 한국 사회의 돌봄은 지속 가능한가?

우리 사회는 그간 돌봄의 책임을 개인에게 부담해 왔습니다. 특히 가정 내 여성 구성원의 비공식 돌봄에 의지해 왔습니다. 정부의 돌봄 정책 역시 특정 계층과 상황을 중심으로 수립되어 왔고 자녀와 부모를 함께 돌보는 이중 돌봄에 시달리는 중장년층을 고려한 정책은 미흡합니다.

돌봄을 단순한 복지서비스나 경제활동의 한 형태로 한정하는 인식에서 벗어나 인간 존엄과 사회 통합을 위한 핵심 가치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돌봄과 관련된 현행법들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특정 계층과 상황을 중심으로 개별 돌봄 서비스를 규율하고 있으나 돌봄의 보편성, 통합성, 공공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돌봄을 기본권 차원의 가치로 재정립하고 돌봄이 국민 모두의 권리이자 책임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임을 명시하고 각 부처별로, 대상별로 분절적으로 시행되어 온 돌봄 정책을 하나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기본법으로서의 상위 법안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돌봄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법의 목적은 돌봄에 관한 국민의 권리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돌봄 정책의 방향과 운영을 위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돌봄권 보장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돌봄, 비공식 돌봄, 돌봄 당사자, 돌봄 노동자, 돌봄 서비스, 돌봄 제공기관, 돌봄 권 등 돌봄과 관계된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을 담았습니다.

셋째, 성별, 연령, 환경, 종교, 가족 형태, 거주 지역, 장애 여부,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돌봄권을 보장받는 데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돌봄의 공공성과 보편성 강화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했습니다.

다섯째, 가정 내 비공식 돌봄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며 돌봄 노동자가 돌봄 노동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받고 안정된 고용 관계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여섯째, 돌봄의 주무부처인 돌봄청을 신설하고 돌봄청장은 돌봄정책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며 돌봄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 계

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엔이 정한 국제돌봄 및 돌봄 지원의 날인 10월 29일을 돌봄의 날로 지정하여 돌봄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인구 집단인 소위 386세대가 이제 노인이 됩니다. 돌봄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돌봄기본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더 늦기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돌봄국가책임제와 함께 돌봄기본사회를 천명하셨습니다.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돌봄기본법을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민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131항 아동기본법안에 대해서는 백선희 의원님께서 직접 제안설명해주시겠습니다.

○백선희 의원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발의한 아동기본법 제정안을 제안설명하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아동 관련 법률은 아동복지법을 비롯해 여러 개별 법률로 분산되어 있으며 주로 교육이나 복지 등 특정 목적에 따라 아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아동은 여전히 권리의 주체라기보다는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아동복지법 역시 아동의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하지만 보호가 필요한 아동 중심으로 다루고 있어 아동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실현하는 데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에 이번 제정안은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이자 권리의 주체로 규정하고 아동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권리, 신체적·정신적 발달을 위한 환경과 자원에 대한 권리, 폭력·학대·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그리고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 등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보호자, 사회, 기업 등 아동을 둘러싼 모든 주체의 책무를 분명히 하고 아동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1991년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바 있습니다. 이제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본법을 제정해야 할 시점입니다.

아울러 이번 제정안은 아동 관련 단체들과의 수차례 협의를 거쳐서 마련되었고 또 현장에서는 아이들 스스로 아동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여야 의원 24인이 초당적으로 함께 발의했습니다.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우리 사회가 아동 중심으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법인 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민 고생하셨습니다.

그 외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청원의 취지설명서는 노트북에 탑재된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 및 취지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정부로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님 나오셔서 보건복지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복지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득·돌봄·의료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등 보건복지정책을 강화하였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인상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보장 수준을 확대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등 사회보장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광역응급의료상황실 및 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 지원 등 응급·소아 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였습니다.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회가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이·전용을 실시하였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추진한 것이나 혹시 미흡한 부분이 없었는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 중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여 설명드리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추진 방안을 마련하여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세출결산 개요는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 김혜진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2쪽까지 일반현황과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주요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구두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개관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징수결정액은 1조 7046억 원이며 1조 2862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총 73조 7578억 원 중 72조 5947억 원을 집행하고 1조 1516억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기금입니다.

국민연금기금 등 3개 기금은 자체수입과 여유자금 회수 증가로 당초 계획 대비 48조 8836억 원 증가한 총 220조 8493억 원을 운용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회계·기금별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징수결정액 1조 4176억 원 중 1조 400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71조 8091억 원 중 98.4%인 70조 6789억 원을 지출하고 58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1조 1244억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예비비 사용 명세입니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및 의료공백 해소 지원을 위한 일반예비비 지출결정액 2004억 원 중 1977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전년도 이월 및 사유입니다.

안산마음건강센터 설치공사 완료 시기 미도래 등 총 234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이용 명세 및 사유입니다.

비상진료체계 구축 및 운영 등을 위해 총 2307억 원을 이용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전용 명세 및 사유입니다.

노인단체 지원, 장애수당 예산 부족분 충당 등을 위해 총 244억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불용 명세 및 사유입니다.

의료급여 결산잉여금 우선 활용, 기초연금 연계감액자 수 증가 등으로 1조 1244억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입니다.

징수결정액 24억 5100만 원 중 24억 45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장애인 차량 LPG 지원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액 8억 7800만 원 중 3100만 원을 수납하고 7억 91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53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등 세입징수결정액 887억 원 중 514억 원을 수납하고 373억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54쪽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조 7474억 원 중 1조 7374억 원을 지출하고 90억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입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책임운영기관은 국립재활원, 국립정신건강센터 등 6개 기관입니다.

세입징수결정액 1950억 원 중 1923억 원을 수납하고 진료비 청구분 미수액 등 27억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63쪽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2013억 원 중 1784억 원을 지출하고 계약기간 미도래 등으로 46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183억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국민연금기금입니다.

수입은 연금보험료 등 총 215조 5184억 원이며 국민연금 급여 지급 등 44조 423억 원, 국민연금공단 운영지원 등 5495억 원을 지출하고 170조 9266억 원을 여유자금으로 운용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입니다.

수입은 담배부담금 등 총 4조 5444억 원이며 건강보험제도 운영 등으로 3조 6214억 원,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 등으로 5700억 원을 지출하고 3529억 원을 여유자금으로 운용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응급의료기금입니다.

수입은 자체수입 등 총 7864억 원이며 응급의료기관 지원 등에 2705억 원,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 3807억 원을 지출하고 1352억 원을 여유자금으로 운용하였습니다.

99쪽 이후에 있는 재무제표 결산 개관 등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께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장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식약처는 국회에서 확정해 주신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며 국민 식의약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바이오·디지털헬스 안전관리와 혁신성장 기반을 확충하였으며 마약류 예방·재활 안전망을 견고히 하였습니다.

지난해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은 식의약 안전의 내실을 다지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를 통해 상세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액은 375억 8200만 원이며 398억 85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350억 40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의 주요 내용은 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과징금 등 경상이전수입이 127억 6800만 원, 의약품 인허가 수수료 등 수입대체경비수입이 229억 2100만 원입니다.

3쪽입니다.

3쪽의 세입결산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세입결산 주요 내역입니다.

수납액은 350억 4000만 원으로 행정처분 과징금 등 경상이전수입 81억 7700만 원, 의약품 인허가 수수료 등 수입대체경비수입 229억 2100만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불납결손액은 7억 97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40억 4800만 원입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현액 7225억 6500만 원 중 7013억 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5억 3900만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77억 2200만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예산결정 후 주요 증감 내용은 전년도 이월액 36억 400만 원, 전용액 7억 9400만 원, 초과지출액 7억 4500만 원, 조정액 1억 5000만 원입니다.

6쪽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사업별 세출결산 현황은 자료 6쪽부터 12쪽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13쪽의 세출결산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세출결산 주요 내역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36억 400만 원이고 현안 대응을 위한 국내외 여비 부족 등에 따라 7억 9400만 원을 전용하였고 의료제품 분야 GMP 현지실사 수행을 위해 수입대체경비 7억 4500만 원을 초과 지출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조정액은 기관운영 기본경비의 부족 등에 따른 내역변경 1억 5000만 원이며 R&D 연구용역 사업 등 계약 이행기간 미도래에 따라 35억 39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사업별 집행잔액 177억 2200만 원입니다.

15쪽입니다.

다음은 재무결산입니다.

재정 상태는 자산이 2946억 원, 부채가 7억 원으로 순자산은 2939억 원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재정운영표와 순자산변동표 등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승관 질병관리청장님께서 질병관리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장 임승관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신임 질병관리청장 임승관입니다.

신임 청장으로서 책임감과 전문가 의식을 바탕으로 위원님께서 주시는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병관리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질병관리청은 건강한 국민,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관심으로 하향 후 안정적 일상을 회복하고 미래 팬데믹 대비체계 고도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신종감염병 이외에도 상시감염병, 만성질환 등 비감염성 건강위해요인에 대한 예방·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공중보건과 보건의료 연구의 중추기관으로서 보건의료 연구개발 역량 강화 등에도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회의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보건안보 강국, 건강한 사회 실현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질병관리청은 2024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국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신 취지에 맞게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집행 과정에서 미진했던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을 부탁드리며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조속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세입세출결산 개요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 개요를 핵심 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질병관리청은 본청 5국 3관, 국립보건연구원, 5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13개 국립검역소, 2개의 국립결핵병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총 1597명입니다.

5쪽에서 13쪽까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주요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질병관리청 소관 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징수결정액 6863억 원 중 6413억 원을 수납하고 450억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총 2조 238억 원 중 97.3%인 1조 9688억 원을 집행하고 43억 원이 금년도로 이월되었으며 507억 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16쪽부터는 일반회계 결산 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세입결산 명세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징수결정액 6380억 원 중 5938억 원을 수납하고 442억 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수납 명세는 18쪽 내용과 같습니다. 지자체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지연, 이자수입 납부 지연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9쪽, 세출결산 명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 9960억 원 중 9699억 원을 지출하였고 26억 원이 금년도로 이월되었으며 236억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22쪽, 예비비 사용 명세입니다.

코로나19 치료제 추가 도입을 위해 예비비 3268억 원 중 3263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쪽 하단 전용 명세입니다.

C형 간염 검사비 미지급금, 항생제 내성균 유전자분석 등을 위해 15억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어서 25쪽, 이월 명세입니다.

금년도로 이월된 금액은 총 25억 원으로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사업에서 코로나19 치료제 보관유통 등 5억 원, 국가통합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Ⅱ에서 7억 원 등이 이월되었습니다.

26쪽, 불용 명세입니다.

코로나19 방역사업 종료에 따라 총 236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사업으로는 코로나19 격리치료비 61억 원, 선별진료소 진단검사비 55억 원 등이 있습니다.

29쪽부터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결산 현황과 재무결산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결산 및 법안별 검토보고를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으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및 법률안 등에 대한 검토보고의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좌석 노트북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상정된 결산 및 법률안 등에 대한 대체토론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예정된 업무보고를 듣고 대체토론과 질의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254. 업무보고

- 가. 보건복지부
-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 다. 질병관리청
- 라. 국민건강보험공단
- 마. 국민연금공단
- 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5시38분)

○위원장 박주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54항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보건복지부의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제도 강화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의료계가 공감할 수 있는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국립대병원을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하고 지역·필수·공공 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충분한 투자와 보상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국민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와 상병수당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AI 기술을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과 크레딧을 확대하고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해 국회 연금개혁 논의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 등을 위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점진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확대하고 장애인연금 대상도 넓혀 나가겠습니다.

인구가족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노인일자리를 지속 확대하고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대응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미래 성장동력이자 의료 질 향상의 원천인 바이오헬스에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회와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복지부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스란 제1차관입니다.

이형훈 제2차관입니다.

정호원 대변인입니다.

김혜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배경택 사회복지정책실장직무대리 겸 복지정책관입니다.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입니다.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입니다.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입니다.

(인사)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 김혜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핵심 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주요 추진 과제입니다.

해당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국정과제안을 포함하여 보건복지부 주요 추진 과제안을 정리한 것입니다.

국정과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관계부처 협의, 국무회의 등 정부 내부 검토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3쪽입니다.

첫째, 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입니다.

국민 중심 보건의료체계 개혁을 위해 가칭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출범하여 의료 혁신 로드맵을 마련하겠습니다.

건강보험 국고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건강보험의 수가 상시 조정체계를 구축하고 종별 가산제를 성과보상제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여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공공정책수가를 확대하고 지역수가와 지역필수의료기금도 신설하겠습니다.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고 공공의료사관학교를 설립하여 안정적인 공공의료인력 양성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둘째, 국민 평생건강 지원체계 확립입니다.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의료 역량이 높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단계적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과잉 우려 비급여의 가격·급여 기준을 설정하여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희귀·난치 질환에 대한 산정특례 적용을 확대하겠습니다.

일차의료 및 건강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 주치의 모델과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고 공적 전자처방 전송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지역 맞춤형 자살예방서비스를 확대하고 급성기 집중치료병원 등 정신질환 치료 인프라도 확충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셋째, 촘촘한 사회보장제도 구축입니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간소화도 추진하겠습니다.

시범사업 정책 효과 분석 및 사회적 논의를 거쳐 상병수당 제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연금제도 개선을 위해 청년층에 국민연금 최초 가입 시 보험료를 지원하고 군복무 크레딧을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이 감액되는 노령연금 소득감액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확립을 위해 국회 연금특위 논의도 적극 참여, 지원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넷째, 노인·아동·장애인 돌봄 강화입니다.

통합돌봄체계 구축은 현안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산·육아 지원 강화를 위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3세 미만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국가 책임 공적 입양체계를 안착시키고 청년미래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위기 아동·청년에 대한 조기 발굴과 밀착 사례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와 최중증 대상 통합돌봄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3급 단일 장애까지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장애 맞춤형 공공일자리도 확충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다섯째, 미래 대비 보건복지정책입니다.

인구·사회 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 노인일자리를 노인인구 10% 이상 수준으로 지속 제공하고 경로당 식사 제공도 확대하겠습니다.

사회적 고립 정책 수행체계를 강화하여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대응 정책을 발굴·추진하겠습니다.

바이오헬스 강국 도약을 위해 보건의료 R&D 투자를 확대하여 초고령화·필수의료 위기 등 국가 난제 해결과 AI 신약 개발 등 유망 분야 성과 창출을 도모하겠습니다.

의료 AI 기술개발부터 현장 활용까지 전주기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약가보상체계를 개선하고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를 활성화하여 제약·바이오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현안사항입니다.

11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입니다.

내년 3월부터 전국에서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안정적 제도 시행을 위해 시군구에 통합돌봄 전담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겠습니다.

재가의료·요양, 일상돌봄 등 기존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고 지역특화 서비스도 도입하겠습니다.

관계부처와 지자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자살예방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최근 경기 악화와 사회적 고립 심화로 자살률이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살 사망자 급증지역 현장 컨설팅을 확대하고 지역 생명지킴이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담인력도 확충하겠습니다.

109 자살상담전화 콜센터를 1개소 추가 개소하고 고립·은둔 청년 대상으로 1 대 1 온라인 상담도 실시하겠습니다.

공익광고, 뉴미디어 등 자살예방 홍보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지자체별 맞춤형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자살예방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간병비 부담 완화입니다.

초고령화로 중증환자에 대한 간병비 부담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요양병원을 의료 중심으로 혁신하겠습니다.

다.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면서 간병인 처우와 역량 향상도 추진하겠습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충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참여 제한을 완화하고 경증환자 선별 입원 구조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요양병원 간병비 추진 방향을 마련하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상종 참여 확대를 위한 이행 로드맵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공적 입양체계 개편입니다.

지난 7월 19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아동 입양 절차를 책임지고 수행하는 공적 입양체계 개편이 시행되었습니다.

결연을 심의 의결하는 입양정책위원회 신설을 위하여 현재 위원 위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위탁기관은 입양대상아동 보호와 양부모 상담·조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0월 1일 헤이그 협약 비준 발효를 앞두고 해외 관계기관에 개편 절차 안내와 국가 간 세부 절차 협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시 서고의 구축 현황을 점검하는 등 입양기록물 이관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15쪽 이하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님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장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주요 업무와 현안을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처는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을 위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현장 중심 정책을 이어 가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고견은 식의약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영택 기획조정관입니다.

김성곤 식품안전정책국장입니다.

김상봉 의약품안전국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계획과 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먹거리 안전망 강화입니다.

온라인 새벽배송 농축수산물 검사를 확대하고 글로벌 수준의 HACCP을 도입하겠습니다.

AI 기반 위해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후·환경 변화로 인한 새로운 위해 요인에 대응하고 위해도가 높은 수입식품 해외 제조업소를 선별 실사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건강하고 균형 있는 식생활 지원입니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을 위한 통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전국에 확대 설치하고 급식소 위생·영양 지원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비만, 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맞춤형 식이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AI 예측 시스템과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을 활용하여 식중독 원인 규명률도 높이겠습니다.

5쪽입니다.

의료제품의 안정 공급입니다.

필수의약품 공공 생산 네트워크를 가동하고 필수의료기기를 제도화하겠습니다.

희귀·난치 치료제의 정부 직접 공급을 확대하고 희소·긴급도입 의료기기의 정부 주도 공급 기반도 마련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허가심사 체계의 혁신입니다.

혁신형 허가심사 체계를 신약뿐 아니라 그 외의 의약품까지 확대 적용하고 AI 허가·심사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신기술 적용 의료기기에 대한 사전 상담과 합리적인 규제를 통해 시장 진입 기간도 단축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바이오헬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입니다.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CDMO 규제과학 지원체계 마련과 원료물질 제조소 GMP 인증을 확대하겠습니다.

디지털의료기기의 심사 절차를 합리화하고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의 성능인증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국제 수준의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으로 K-뷰티의 글로벌 경쟁력도 높이겠습니다.

8쪽입니다.

마약류 오남용 중독 예방 강화입니다.

환자 투약 이력의 사전 확인과 셀프처방 금지성분 확대를 추진하고 AI 기반의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 시스템으로 예측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기간 단축 등으로 신종마약의 국내 유입을 조기 차단하겠습니다. 맞춤형 재활, 사회복귀 지원과 대상별 예방 교육도 확대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주요 현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식중독 위험이 높아진 만큼 7~9월을 주의 기간으로 정하고 범정부 식중독 신속 대응

체계를 운영 중입니다.

12쪽입니다.

APEC 행사와 수해지역 대피 시설 등에서 사고가 없도록 현장 점검과 신속 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주요 식중독 원인균인 살모넬라의 저감을 위해 달걀, 액란 등 주요 원인 식품의 오염원을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손보구가세’ 홍보 슬로건을 활용하여 예방 수칙을 실천하는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신규 위생용품의 안전관리입니다.

올 6월부터 칫솔, 치실 등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를 신규 위생용품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규 위생용품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차질 없이 안전관리를 하고 있으며 특히 구강관리용품은 자동전자심사로 신속 통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붙임의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승관 질병관리청장님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장 임승관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하반기 질병관리청 업무계획을 보고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에 질병관리청은 연초 발표한 업무계획에 따라 미래 팬데믹 대비·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고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만성질환과 건강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남은 2025년에도 질병관리청은 일상 속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질병관리청은 임시국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제안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질병관리청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숙영 질병관리청 차장입니다.

이상진 기획조정관입니다.

조경숙 감염병위기관리국장입니다.

손영래 의료안전예방국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질병관리청 현안 및 중점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점 추진 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신종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비·대응입니다.

감염병 위험 조기 인지를 위해 다중적 감시를 확대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매개체 확산에 대비하여 감시와 방제 간 연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감염병 의료대응 통합관리를 위해 분산된 감염병 전담치료병상을 통합·재정비하고 대규모 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병상을 확충하겠습니다.

5쪽, 상시감염병 관리·퇴치전략 정교화입니다.

생애 전주기 국가예방접종 지원을 위해 남아 청소년의 HPV 예방접종, 학령기 청소년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 국가예방접종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6쪽, 국내외 원헬스 거버넌스 선도를 위해 범부처 원헬스 협의체를 구성하고 의료감염 관리, 항생제의 내성 관리를 통해 환자가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7쪽, 초고령사회 만성질환 및 건강위해 관리입니다.

국가건강조사를 통해 노쇠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8쪽, 올해 4월부터 실시한 등록통계와 실태조사를 통해 희귀질환자 맞춤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폭염 등 이상 기후에 선제 대비하고자 전국 및 시도별 환자 발생 예측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9쪽, 감염병 및 보건의료 연구 주도입니다.

mRNA 백신 개발 지원을 비롯한 필수 국가예방접종 백신의 자급화, 차세대 백신 플랫폼 기술과 치료용 항체 개발 지원으로 백신과 치료제 신속 개발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0쪽, 바이오뱅크 및 코호트 기반의 보건의료 데이터를 수집·공개하여 인공지능 학습 용 데이터를 확대 구축해 가겠습니다.

11쪽, 글로벌 보건안보 및 공중보건 선도입니다.

글로벌 보건안보를 선도하는 K-보건안보 이니셔티브를 추진하여 공중보건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 정책 및 연구 협력을 주도하겠습니다.

13쪽부터 주요 현안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여름철 감염병 대비·대응입니다.

먼저 코로나19 하절기 유행 대응입니다.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와 병원체 검출률은 최근 6주간 증가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치료제 및 병상 수급을 사전에 점검하고 10월부터는 유행 변이에 맞는 새로운 백신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6쪽, 모기매개감염병 대응입니다.

여름철 매개모기 활동 증가 및 해외여행 증가로 모기매개감염병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모기매개감염병의 국내 전파를 차단하고자 입국 시 유증상자 대상 뎅기열 검사를 실시하고 중국, 인도네시아 등을 검역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에 대한 대응입니다.

집중호우로 이재민이 발생함에 따라 집단 발생 위험성이 큰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에 일일감시체계를 운영하여 집단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7쪽, 온열질환 감시 및 대비체계 강화입니다.

전년 대비 온열질환자가 약 1.8배 증가함에 따라 온열질환의 대비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에 환자 발생을 감시하고 결과를 매일 공개하는 한편 실외 근로자, 장애인 등 대상자 맞춤형 건강 수칙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기상 자료와 연계한 온열질환 발생 예측 정보를 의료기관과 지자체에 시범 제공하고 있습니다.

19쪽, 넥스트 팬데믹 대비 역량 정비입니다.

20년 코로나19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공중보건 위기 역량을 점검 보완하도록 세계보건기구 주관 제2차 합동외부평가를 이번 8월에 실시합니다. 이번 합동외부평가에는 12개 부처가 참여하여 공중보건 위기 전반에 대한 대응 역량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20쪽입니다.

8월 평가 이후 11월에 공개되는 결과를 바탕으로 권고사항은 범부처 국가 계획 및 정책에 반영하여 국가 보건안보 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질병관리청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님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안녕하십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정기석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의 박주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단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단은 사회보장 중추 기관으로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건강보험은 전 국민 건강보장 달성과 의료비 부담 완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해 왔고 장기요양보험은 대표적인 노후보장 제도로 성장하여 어르신의 건강하고 편안한 노년과 가족의 돌봄 부담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국민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단은 소통과 배려의 자세로 국민과 함께하면서 합리적인 제도 운영과 효율적인 조직 관리로 국민들께서 더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지원을 강화하고 건강약자에 대한 보완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해서 의료 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만들겠습니다.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를 구축하고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합리적 의료 이용 문화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장기요양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

고 돌봄 통합지원 체계 정립을 위해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미래의 재정 위험에 대비해 철저한 재정관리와 지속적인 혁신으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주시는 고견은 공단 운영에 적극 반영해서 더욱 우수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로 국민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공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건홍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사)

공단의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 업무 추진현황입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현황은 지속가능한 보험재정 구축부터 효율적 조직 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지속가능한 보험재정을 구축하겠습니다.

재정 전망과 위험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재정 분석 시스템을 확대하는 등 위험 요인 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지출 항목에 대한 모니터링과 급여 분석을 강화하면서 자금 운용을 고도화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불법 개설 기관과 부정수급에 관한 관리 강화로 재정 누수를 차단하겠습니다.

불법 개설 기관 개설 허가 단계부터 진입을 차단하고 특사경 도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부당이득금에 대해 징수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요양기관 본인 확인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겠습니다. 요양기관 방문 확인을 확대하고 부당 청구와 보험 사기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필수의료 관련 정부 정책을 지원하고 국민 건강과 직결된 필수의약품은 신속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으로 접근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비급여 정보를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건강약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병원 간병 지원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상병수당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지원도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해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통합재가서비스, 재택의료센터 등 재가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통합 판정 체계와 돌봄 통합지원 사업도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서 신규 진입 및 갱신 기준을 표준화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의무화와 승급제 등을 통해 전문성도 강화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적정 의료 이용을 지원하겠습니다.

학생건강검진 시범사업으로 생애주기별 검진을 확대하는 한편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사업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주요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근거를 생산하면서 바이오헬스 산업계를 대상으로 맞춤형 익명 정보를 구축·제공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자격·부과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징수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소득 중심 부과를 지속 추진하고 자격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디지털·AI 기반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모바일 중심의 전자고지 서비스 확대 등 디지털 민원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체납 유형별 맞춤형 징수로 징수의 효율을 높이겠습니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 능력을 고려하여 결손 기준을 완화하는 등 의료수급권을 보호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효율적으로 조직을 관리하겠습니다.

전사적인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내부통제 강화와 윤리경영 실천 생활화로 국민 신뢰를 제고하겠습니다.

ESG 경영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사회 공헌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사회와의 상생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 가고 친환경·탄소중립을 선도하면서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님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국민연금공단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18년 만에 모수개혁을 여야 합의로 이루어 낸 의미 있는 해입니다. 공단은 개정법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연구 지원과 대국민 홍보, 기금 수익률 제고 등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를 포함한 임직원은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경청하고 기관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오늘 참석한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원주 기금이사입니다.

이기성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준비된 자료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업무현황과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공단은 여성, 청년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가입 추진으로 금년 4월 말 기준 소득신고자 1901만 명, 소득신고율 87.3%로 연금수급권 확보자 1100만 명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보험료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납부 부담을 완화하는 등 연금 혜택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청년층, 중·장년층 대상 세대별 맞춤형 안내와 제도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건설일용근로자 등 고용 여건이 열악한 계층의 가입과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금년 4월 기준으로 723만 명의 수급자에게 매월 3조 9000억 원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단계 검증 시스템을 통한 지급 결정, 공적 자료의 실시간 연계로 변동 사항의 즉시 처리 등 정확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소득대체율 상향 등 개정법 시행 준비와 함께 급여 서류 직접 확보, 비대면 신청 확대 등 수급자의 편의를 높이고 수급권 변동 신고에 대한 홍보 강화,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측 모형 적용 등 부정수급 및 환수금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지난해 기금은 수익률 15.3%, 수익금 160조 원의 성과를 기록하였습니다.

기준포트폴리오 도입으로 다양한 투자가 가능한 유연한 자산배분 체계를 마련하였고 해외·대체투자, 신기술 기반 투자를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연금개혁에 따른 운용환경 변화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컨설팅을 추진하고 위탁운용사 선정 시 정성적 평가 강화 등 사모투자 운용체계를 개선하며 대체투자자산 공정가치 평가체계 개선과 해외사무소 장기근무제도 도입 등 운용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그동안 ESG 통합전략 적용 자산군을 확대 적용하고 탈석탄 전환을 위한 투자 전략을 도입하였습니다.

앞으로 해외 주식 투자대상 기업과의 대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외부 환경 변화를 반영해 국내 주식 의결권행사 기준 개정·검토와 석탄 관련 기업 에너지전환 투자 전략도 착실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청풍리조트 운영과 노후긴급자금 대부를 통해 가입자와 수급자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풍리조트 흑자 기조 유지에 노력하고 신규 대부 신청자 우대, 모바일 신청 확대 등 대부 서비스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국민들의 노후 준비 지원을 위해 청년층 및 취약계층 대상 재무 상담을 확대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협업으로 서비스 수요를 발굴하고 온라인 진단, 상담 등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공단은 연간 66만 건에 달하는 장애 심사 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재산 관리 서비스의 본사업을 준비하는 한편 장애인 의료 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해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금년 4월 기준으로 약 691만 명의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정보 접근이 취약한 분들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맞춤형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지난 5월 공단은 차세대 정보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개통하였습니다. 아울러 전자증명서 발급, 간편인증 등을 확대해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연금 AI 사원을 개발해 외국인 통역, 교육 자료 등 다양한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앞으로 AI 사원 지식 강화 등 업무 시스템 및 서비스 전반에 인공지능 활용 정도를 높여 나가는 한편 국민연금 데이터를 적극 개방·공유하여 민생 정책 수립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공단은 중소기업 및 지역과의 상생협력 노력을 인정받아 4년 연속 동반성장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습니다. 앞으로도 스타트업 성장 지원 프로젝트 참여, 마을자치연금 확대 등 사회적 책임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페이지부터는 인력 및 주요 통계 현황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공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민**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님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강중구** 안녕하십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강중구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우리 원 업무 전반에 대해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원은 요양급여비용 심사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보건의료정책 개발 등을 통해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환경을 조성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적정 진료 보장을 위해서 2024년 기준으로 약 16억 2000만 건, 132조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심사하고 총 36개 항목에 대해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여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신뢰받는 심사를 위해서 2024년 초부터 현재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의료계로부터 700여 건 이상의 개선 요구를 받아서 검토하는 등 최신 의료 동향이 시의성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기준 개선을 추진하고 있고 또한 타당성 있는 지표 개선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중증·응급, 소아진료,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를 개선하고 다양한 지불제도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의 합리적 비급여 이용을 위한 비급여 진료비 가격정보 공개로 국민의 정보제공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원의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 추진현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급여 결정부터 진료비 심사, 심사 사후관리까지 지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제 혁신을 위해 고가·중증질환치료제 신속 등재 등 합리적 등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의료행위, 약제, 치료재료 등 보험급여 재평가를 통한 급여체계 정비를 하고 있고, 약제 실거래가 조사를 통해 의료 비용을 적정 가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진료비 심사를 통해서 적정 진료 보장을 위해 사전 예방, 전산·전문 심사, 사후관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실효성 있는 평가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환자 안전과 의료의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신규 도입된 슬관절치료술을 포함하여 총 36개 항목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재활의료기관 등 의료 분야별 의료기관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난임시술 분야 평가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를 집중 인상토록 하고 미래 지불제도 개편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신포괄수가 모형 개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 합리적인 지불제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범사업은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서 본사업으로 적극 전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확대를 통해서 합리적인 의료서비스 선택을 지원하고 인터넷·모바일 서비스 등을 통해 진료비 확인서비스의 접근성을 개선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정보통신기술 기반 보건의료 인프라 관리입니다.

인력, 시설, 장비에 대한 보건의료자원 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수급 불안정, 공급 중단, 위해의약품 관리를 통해 의약품 유통 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인 DUR 기반 정보 제공 확대로 보다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DUR 확인 의무화가 필요하므로 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데이터 기반 혁신성장 체계 구축을 위해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고 응급의료 지원, 내 정보 열람 등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국민 안전과 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 관리 및 모니터링에 힘쓰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보건의료 분야 국제협력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국제심포지엄, 국제연수 등 여러 국제기관들과의 협력도 지속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건강보험종합계획을 연계한 다양한 보건의료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연구 성과 공유를 위한 확산 활동도 다각화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 법안 그리고 청원과 방금 들으신 업무보고 내용에 관하여 대체토론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1차 질의 시간은 간사님들과의 협의에 따라서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7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소병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훈 위원** 너른고을 광주시갑 소병훈입니다.

장관님,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뽑고 다시 이 자리에서 뽑는데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 사회적 약자인 노인과 장애인 정책을 우선 과제로 두어 주실 것을 당부 드렸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취임 이후 장관님께서 곧바로 고령·장애인 돌봄 그리고 활동지원서비스 개선 회의를 주재하시는 걸 제가 뉴스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재정안정성과 수요 간의 균형 방안을 직접 지시하신 점, 제 나름대로는 높게 평가합니다. 다만 그런 실행을 위한 빠

른 행동이 다른 모든 공직자에게 함께,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도 얘기를 합니다.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고 현장 의견 청취를 위해 노인·장애인 단체와의 간담회를 잇달아 열어서 정책 방향을 점검하신 것도 저는 좀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현장은 여전히 변화의 속도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과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하루라도 늦출 수 없는 과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그런 점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소병훈 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몇 가지 준비해 온 질의가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관리 강화하는 것과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 그때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장애인 의료비 누적 미지급금 해결 대책과 정률제 개편을 한번 검토를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도 제가 준비를 해 왔고요.

노후준비서비스 사업의 일반회계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도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보수 단가, 사업 기간 및 안전사고 대책 관련 개선방안을 빨리 준비해야 한다는,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전문 의료 지원 개선 및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도 필요하다.

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 실집행 부진 및 정책 기반 미비에 대한 문제점도 제가 체크를 해 봤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 오늘 제가 7분 질의를 해야 되는데 아마 이 중에서 한두 개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나머지는 서면으로 보낼 테니까 좀 잘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소병훈 위원 지난 6월에 간호법 시행 이후에 간호법 하위법령으로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에 대한 최초의 시행규칙을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행규칙을 만드실 때 잘 아시겠지만 현장의 목소리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시행규칙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게 되면 너무 부족하고 혼란스럽다.

그래서 저는 장관님께서 물론 새로 부임하시고 여러 현안 쟁기시느라고 바쁘시겠지만 국민건강권과 맞닿아 있는 간호법의 최초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많은 간호사를 그리고 간호단체들이 있지만 그분들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 시행규칙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들었으면 하는데, 지금 아직 그런 기회는 못 가지셨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제가 직접 기회를 갖지는 못했고요. 저희 담당 부서에서 여러 번 간담회를 하고 의견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병훈 위원 물론 다른 모든 문제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마는 이번에 특별히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번 간호사법 제정하고 처음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장관님께서도 직접 들어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기회를 짧게라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 드는

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지금 간호사법에 따른 시행규칙 제정이 협안이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의견이 많이 조율되고 있어서 제가 직접 단체 만나 뵙고 의견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훈 위원** 물론 진행 과정에서 몇 가지 미비한 게 있겠지만 그건 그때 수정하더라도 장관님께서 한번 꼭 의견을 들어 봐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관리 강화하고 장기요양지원센터 설치 확대가 필요하다는 부분인데요. 지난 2024년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예산이 177억 1200만 원이 교부되었는데 집행액은 106억 2500만 원, 집행률은 57.2%, 필요한 사업인데도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집행률을 보니까 각각 57.2, 23.4, 57.2, 이렇게 집행 부진이 계속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나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아마 실집행률은 조금 낮지만 기간이 좀 지나면서 집행률이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시설이다 보니 조금 예산이 자연 집행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살펴보고……

○**소병훈 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도 챙겨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물론 부지 매입이랄지 설계하고 착공하고 이런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게 지금 필요한 사업이고 시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장관께서 직접 챙겨 주시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제 기간에 집행될 수 있게끔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소병훈 위원** 그리고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소병훈 위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 예산이 매년 실제 소요액을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당해 연도에 발생한 지원금 전액을 지급하지 못하고 다음 해 예산으로 이월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쌓이는 누적 금액이 많아지다 보니까 일반 병원에서 장애인 의료 지원사업 해당 환자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올해만 해도 이번 2025년에 편성 예산 358억 원의 절반이 넘는 53%가 미지급 누적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절반을 이걸로 쓰면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할 텐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수요를 정확히 추계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4년도도 한 193억 원 미지급금이 발생한 걸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자자체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병훈 위원** 사회적 약자 중에서 정말 가장 약한 사람이 장애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부분도 각별하게 관심 가져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사항은 서면으로 질의할……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병훈 위원 하여튼 장애인, 노인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준비해 오지 못했던 분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빠른 속도로 실행하고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알겠습니다.

○소병훈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주민 다음은 안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안상훈 위원 취임 늦었지만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감사합니다.

○안상훈 위원 장관님, 저는 사회복지학과 교수 출신이고 복지국가 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복지국가를 오래오래 후대에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안상훈 위원 그런데 국정기획위 발표나 오늘 부처 업무보고를 보면 모든 내용들이 주는 것 중심으로 장밋빛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거기에 드는 돈은 어떻게 할지, 이후 후대에 물려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남은 개혁들을 어떻게 할지 그런 것들이 좀 빠져 있어서 장관님께서 보건의료 쪽은 해박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부분 좀 공부하시고 가슴에 새겨서 이번 정부 내에서도 좋은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을 향한 개혁에 매진해 주십사 부탁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짚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보고서를 보면요, 2025년 보고서인데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이 향후 10년간 2배로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지금 많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국민부담률은 2035년 기준 이제 선진국 최상위 수준인 47.1%까지 증가할 겁니다. 지금 프랑스가 제일 많이 국민 부담을 내고 있는데 그것을 넘어간다는 거지요. 이게 먼 미래가 아닙니다. 고작 10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위해서 재정적인 지속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골든타임은 이미 지나 버렸고 하루하루가 급한 상황입니다. 이것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안상훈 위원 관련해서 먼저 연금개혁부터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 임기 내에 국민연금 재정안정을 위한 추가 개혁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국회에서 연금 구조개혁 관련된 특위가 운영되고 있어서요 국회와 상의하면서 구조개혁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상훈 위원 지난 정부 시기에 현 여당 위원님들께서도 국회에 떠넘기지 말고 복지부가 잘 준비해서 오라고 질타를 계속하셨거든요. 그 말씀 그대로 반사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민연금기금 적자가 하루에 얼마씩 쌓이고 있는지 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그 금액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안상훈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하루에 600억 이상 지금 쌓이고 있고요. 이재명 정부 시작 이후에 이미 5조 원 가까이 적자가 추가됐습니다.

올 초 연금개혁, 저는 개혁이라고 보지 않지만 올 초에 됐던 소위 연금개혁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떻게 평가하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보장률을 어쨌든 43%까지 올려서 노후소득보장은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청년세대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 등은 좀 더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상훈 위원** 구조적인 개혁이 아니고요. 공부를 좀 더 해 보시면 알 건데 국민연금 자체의 재정적인 지속가능성이 지금 빨간불에 빨간불, 빨간불이 켜진 상태입니다. 국민연금 장관님이 담당하고 계시고 국민연금 자체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지난번처럼 더 내고 더 받는, 물론 노후소득보장도 중요하지만 제가 목 놓아 외쳤던 고용노동부 쪽에서 하고 있는 퇴직연금 쪽에서 오히려 소득보장을 해 주고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더 올리는 쪽의 개혁이 2차, 3차, 4차 지금 남아 있는 거거든요. 지난 정부에 어느 정도 했다 그러면 이번 정부도 보험료 올리는 것 꼭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은 진짜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옆에 차관님이 전문가시니까 보고 제대로 받으시고 이 부분 꼭 좀 챙겨 주시고 저는 계속 여쭐 거거든요. 오늘처럼 이렇게 소프트하게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노후소득보장 계속 얘기를 하지만 지금 국민연금 문제는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해결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이것은 모든 연금 전문가들이 공히 외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 지금 돈 어떻게 하면 더 걷는지가 관건이다. 또 그것을 청년세대에게 넘기지 않고 빨리 불을 끄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도 중요하다.

국가가 지금 보장을 한다고 해도 이것은 보험료가 아닌 나중에 세금으로 또 미래세대에 전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세대가 해서는 안 될, 우리가 자식들한테 빚을 넘겨주면 안 되겠지요? 꼭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여쭤보면 지금 현재 스무 살짜리 청년들이 연금 받아야 될 시점에 지금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면 그때 연금 받을 수 있을까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현재 연금이 소진되는 시기가 한 2069년, 71년 정도로 예측이 되고 있어서요……

○**안상훈 위원** 지금 스무 살짜리 청년들이 66세 되면 기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이후에 미래세대가 내야 될 부담금은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때문에 확정적으로 더 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대충 어느 정도 내야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받는 월급의 한 몇 % 내야 될 것 같으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제가 정확하게 수치까지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안상훈 위원** 대충.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한 30% 이상이라고……

○**안상훈 위원** 40% 육박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그렇게 봤습니다.

○**안상훈 위원** 지금 우리가 이것을 뒤로 뒤로 넘기면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야당 위원이라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여당 위원일 때도 똑같이 얘기했던 것이고 장관님께서도 이 문제는 나중에 우리 후세대한테 ‘그때 정은경 장관님이 이것 그냥 대충 미루고 연금개혁 취임 얼마 전에 했으니 이번 정부는 연금개혁 문제는 대충 넘어가도 되겠다’, 이렇게 안일하게 하시면 나중에 정말 역사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실 겁니다. 그것 원치 않으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안상훈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 전까지 지금 정부가 생각하는 이번 정부의 국민연금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보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안상훈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회복지의 지속가능한 제도 개혁에 대한 부분과 국민연금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민** 다음은 최보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보윤 위원** 정은경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무장애 관광이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는 환경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장애 관광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카드를 들어 보이며)

보시면 이게 실물카드 형태인 장애인등록증인데요. 이 등록증을 보시면 국문으로만 되어 있어서 해외에서는 이용이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종이 서류로 된 영문 장애인등록증 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사용을 해 오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진도 없고 본인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또 종이 서류의 특징상 훼손 가능성이 높아서 불편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장애인등록증 유형에 영문 장애인등록증을 추가하도록 권고한 것은 매우 긍정적인 조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편 지난 1월에 국회에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현재 서비스 구축 사업이 진행 중이고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발급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모바일을 포함해서 모든 장애인등록증에 영문 표기 기능을 기본으로 넣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해외여행을 갈 때도 휴대전화나 실물카드만 있으면 바로 신분을 증명할 수 있어서 행정 효율성은 물론 장애인분들의 편의도 훨씬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요. 또 나아가서 이런 제도가 자리 잡으면 우리나라의 무장애 관광 인프라 수준도 국제적으로 한층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검토 결과와 추진계획을 의원실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저희가 장애인단체와 간담회를 해서 의견을 수렴했고요. 그 수렴한 의견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보윤 위원**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대전의 한화생명볼파크 야구 경기장에서 발생한 사건 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장애인 관람석을 제거했다고 들었습니다.

○**최보윤 위원** 예, 맞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 따르면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및 도서관 전체 관람석, 열람석 수의 일정 부분 이상은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위치를 고려해서 설치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화이글스 구단에서 장애인석에 인조잔디를 깔고 장애인석 표지를 의도적으로 가리고 이를 연인석 등 5만 원짜리 특별석으로 해서 123개 판매를 해서 경기당 약 500만 원씩 총 2억 원이 넘는 부당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더욱이 구단이 대전시의 시정명령을 두 차례나 무시를 했고 결국 고발 방침이 알려진 뒤에서야 복구하겠다고 밝힌 사안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사안이 특정 구단만의 일탈인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은밀히 반복되고 있는 관행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장관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국 모든 스포츠경기장의 장애인석 운영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지자체와 실태 점검 방안을 협의해서 조사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최보윤 위원** 이번 사안은 단순한 시설 운영 문제나 행정 위반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권리 침해라고 봐야 될 것이고요. 또 스포츠경기장 운영의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야구, 축구, 농구 등 모든 스포츠경기장에 대해서 장애인석 운영 실태, 즉 요금 부당 징수 여부나 또 동반자석 설치 의무 이행 여부 또 이동통로 확보 여부 이런 등등의 부분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복지부는 이 부분에 대한 전국 실태조사를 즉시 전면 점검을 하고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 엄정한 제재와 함께 신속하고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위원님 말씀 주신 조사 항목 등을 반영해서 조사 계획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최보윤 위원** 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가통합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입니다.

우리나라는 국가 주도로 20년 이상 전 국민 건강검진을 시행해 왔고 이를 통해서 고품질의 의료·건강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축적해 온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나라라고 봅니다. 이러한 환경은 바이오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약 개발이나 맞춤형 의료 또 의료기술 혁신에 있어서 매우 유리한 기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강점을 바탕으로 해서 정부가 작년부터 2032년까지 총 100만 명 규모의 바이오 빅데이터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1단계, 즉 2024년에서 2028년에 75만 2000명을 모집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올해까지 누적 목표치 21만 497명에 비해서 올해 4월 말 기준 모집 실적이 1만 5200명이기 때문에 달성을 7.2%에 불과합니다. 특히 중증질환자의 경우 목표 대비 4.7%라는 매우 저조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5월이면 마무리됐어야 될 모집 기관 선정이 연말이 돼서야 완료가 됐고 또 희귀질환·중증질환·일반 참여자, 모집 기관 모두 선정이 늦어지면서 사업 착수 시점이 수개월 이상 이미 지연이 된 상황에서 필연적으로 참여자 모집도 늦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장관님 보시기에 모집 기관 선정이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제가 보고받기로는 모집 기관의 인건비나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보고받았습니다.

○최보윤 위원 참여 기관 인프라 구축 비용 부족, 동의 절차가 또 복잡한 부분도 있습니다. 또 의료현장 부담,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이 추세라면 앞으로의 연차별 목표랑 전체 사업 일정이 심각하게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 계획으로 과연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8월 14일 현재 한 5만 7000명 정도가 구축이 됐고 건강검진이 통상 연말에 많이 몰려서 진행되기 때문에, 최대한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는 부족했던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하도록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보윤 위원 지금 7.2%, 4.7%는 매우 저조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많이 중요하고 특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참여자의 동의를 얼마나 이끌어 낼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여자의 신뢰 확보 또 참여 의사 를 적극적으로 이루어 낼 수 있는 설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지금처럼 단기적 금전적 보상만으로 참여를 끌어내기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현재 혜택이 약 5만 원 수준이더라고요. 그런데 국민 입장에서는 ‘5만 원에 내 생체 데이터를 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거부감이 들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단순히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왜 이 사업에 내가 참여를 해야 되는가 또 결과가 어떻게 국민 전체 건강 수준을 높이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전 보상 외에도 데이터 제공의 사회적 가치와 활용 방안 또 참여자 본인에게 분석 결과를 환류하고 이런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제도개선이나 또 의료현장과 산업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에 대한 설계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장관님,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개선된 추진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서 본 의원실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위원님 말씀 주신 개선방안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추진계획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보윤 위원 장관님 되셔서 이제 여러 정책을 추진하실 때 이런 체감형 정책 그리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에 대한 의지를 꼭 좀 강하게 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민 다음은 장종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종태 위원 대전 서구갑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위원입니다.

지난 13일이지요. 대통령께서 복지 신청주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고 개선방안을 검토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대책 마련을 위한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는 보도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저도 오랜 기간 기초자치단체에서 근무를 하면서 시혜 복지 시대에서 지금 권리 복지 시대까지를 같이 경험한 사람인데 사실 이런 복지제도가 있다는 자체를 모르고 있는 사람도 많고 그 제도를 알고 있어도 결국에는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신청주의에 의해서 신청을 하지 않으면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사회에 엄청난 큰 파장을 지금 몰고 오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께서 이런 부분을 주문하셨고 신청주의를 확실하게 개선하라는 말씀이 있었다고 해서 누구보다도 실제 경험하면서, 거기에 접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기쁘게 느꼈습니다.

장관님, 지난달 초에 우리 대전 서구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모자가 또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사건은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장종태 위원 그 사망한 모자가 발견되었을 당시에는 우편물함에 단전·단수 독촉장이 꽂혀져 있었고 또 그 이전 5월 달에는 어머니 A 씨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을 해서 긴급생계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도 됐습니다. 긴급생계 지원 상담을 할 당시에 그 담당 직원은 분명히 ‘기초생활보장 수급 상담을 위해서 꼭 한번 다시 방문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A 씨는 다시 재방문을 하지 않았고, 결국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신청주의라는 어떤 벽에 부딪혀서 안타까운 죽음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지원 대상자의 방문 신청을 기다리다가 발생하는 이 안타까운 사건은 매년 계속 반복된다는 데 문제가 더 큰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2014년도에 있었던 송파 세 모녀 사건, 여기 자료에도 나옵니다만 이후에 연도별로 계속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아마 2015년도에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위기정보 18종을 입수 분석을 해서 대처를 해 나가고 있고 최근에는 47종의 위기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확대시켜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또 최근에는 전 국민 고용보험을 위해서 시작한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 등을 통해서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로 여겨져 왔던 비임금노동자의 소득정보도 지금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 사각지대에서 일가족 사망이라는 비극이 근절되지 않는 그 이면에는 대상자를 발굴하지 못해서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화면 한번 돌려 주시겠습니까.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및 발견을 해서 지원으로 이어지는, 실제 복지서비스 수혜로 이어지는 대상자는 보시다시피 한 50%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결국 복지 신청주의의 벽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것이 상당히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부분입니다.

대통령님의 지적으로 마침내 복지서비스를 자동 지급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를 검토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어서 참 다행스럽기는 합니다만 조금만 더 일찍 움직였다고 하면, 죽지 않아도 될 아이들이 죽었다라고, 사람이 죽었다라고 생각하면 안타깝기가 그지없습

니다.

다만 모든 복지서비스 관계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 것대로 이루어지지는 않겠지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을 해결하고자 하는, 이번 차제에 확실한 방안을 잡아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이런 주문을 합니다.

시행 과정에서 개인정보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는 이런 말씀도 많이 하지만 이 문제야말로 사람의 생사를 결정짓는 이런 중차대한 문제라고 하면 우리 기관에서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정보들을 최대로 활용해 가지고 이 사람이 위기가구 대상이 된다라고 판단한다면 좀 더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제도적으로, 우리가 발굴도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행정에 있어서 적극행정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제가 직접 일을 할 때 그런 사람이 소득 수준에 걸려서 보호를 받지 못한다 또 보호자가 있어서 보호를 받지 못한다, 확인해 보니까 보호자가 상당히 저명한 사람이고 재산도 많은데 부모를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것은 우리 공공에서 좀 커버를 해 줘야 될 사항인데 그런 것들을 방치하면 이런 대형사고로 연결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장관님께서 이번 차제에 그런 복지 사각지대가 좀 줄어들 수 있도록, 가능하시다면 복지 사각지대를 완전 해소할 수 있도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적극행정을 펼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위원님 지적해 주신 자동지급제에 대해서는 현재 복지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 사업이 한 500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소득·재산 기준이나 이런 지원하는 범위가 좀 다르고 또 법에는 개인 동의를 전제로 하는 법령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런 보편적인 복지가 확대되고 또 AI 등의 기술들이 발달된 것들을 감안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그 사각지대를 줄이고 자동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검토하고요.

아마 기술적인 부분들까지 좀 검토하고 난 다음에는 법에 대한 개정이라거나 아니면 사회적인 의견수렴이라거나 하는 그런 절차 등을 거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또 방안이 마련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태 위원 하여튼 세심히 살펴 주시고 검토된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 의원실하고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민 장관님, 두바이 같은 데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써 가지고 개인정보의 보안성을 강화시키면서 그걸 행정에 적극적으로 이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개인정보 보호라는 것들을 좀 달성하다 보니까 지금 장종태 위원님의 질의하신 이런 쪽으로 가기가 좀 어려운 측면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그런 블록체인 기술도 사용할 수 있는지, 좀 더 보안이 강화된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를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민** 서명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명옥 위원** 서울 강남갑의 서명옥 위원입니다.

장관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장관님께서는 부디 모든 국민을 위해서 보건복지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공익을 항상 최우선으로 두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명심하겠습니다.

○**서명옥 위원** 지난 2년간의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인력의 이탈이 이제는 서서히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전공의들도 수련협의체를 통해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고 지난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년을 계기로 전공의들의 열악한 수련환경과 열악한 처우 환경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의 기반인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복귀하고 있는 이 시점이야말로 본 위원은 수련환경 개선을 하는 데 가장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난 3월과 이달 8월에 두 번에 걸쳐서 저는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수련환경 개선 내용을 담은 전공의법 개정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전공의 하반기 수련 재개가 시작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예상되는 부작용이 많습니다. 장관님, 잘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의 복귀율이 낮을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서명옥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귀는 하지만 지난 전반기에 도 보시던 바와 같이 필수과가 아닌 인기과와 수도권 위주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따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를 복지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해결 방안이 뭔지에 대해서는 제 질의 마지막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PA 간호사와의 업무 혼란 가능성에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미 PA 간호사들은 업무를 하고 있지요. 그렇지만 전공의들이 복귀함에 따라서 업무 영역을 두고 서로 갈등과 충돌이 저는 예상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그 갈등과 충돌을 없애기 위해서 간호법의 시행령이 만들어지고는 있지만 아직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관님, 이 간호법 시행령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혼란 방지를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인지 이 결과도 저희 의원실로 별도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전공의 수련 연속성 확보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전공의의 군복무로 인한 수련 연속성 이슈가 지금 전공의 당사자에게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위급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 입영한 군의관과 공보의 대부분은 의정 갈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수련을 마치지 못하고 사직한 전공의들입니다. 이 전공의들이 입영을 했는데 대부분의 전문과가 뭐냐 하면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소위 필수과입니다. 전체의 46%에 달하는 전공의들이 필수과를 전공하다가 사직한 전공의들입니다. 이들의 수련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필수의

료는 봉괴로 이어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추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미 하반기 전공의 복귀 일정이 결정되고 또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 논의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복지부에서는 신속한 답변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공무원들 군에 있을 때 합격을 하면 임용을 유예해 주는 제도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서명옥 위원 따라서 이 임용유예 제도를 이번에 한시적으로 군복무 중인 사직 전공의들에게 적용하여 가지고 전공의 모집을 할 때 이 사직한 전공의들이 지원을 하고 수련 기관 합격 처리와 함께 군복무를 마치면 본인이 수련을 하던 그 병원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길을 터 주는 것에 대해서 장관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지 어떤지에 대해서 짧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군복무자에 대해서 이번 하반기에 지원하는 것은 현재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분들이 군복무 마치고 복귀했을 때 연속성을 어떻게 보장해 줄까에 대해서는……

○서명옥 위원 아니지요, 아니지요. 그 부분을 복귀하기 전에 문제를 만들어 내놔야지 그 사람이 지금 복귀를 못 한다고요, 군복무 마치고 나오면. 나오면 티오가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신속하게 마련해 놔야 되지, 그때 가서…… 그러면 그때 복무 마치면 그 군의관들 나와서 어디로, 어느 병원으로 갑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추후 다시 한번 제가 답변하실 기회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서명옥 위원 (영상자료를 보면)

지금 문제는 군의관도 그렇지만 공보의 숫자도 현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무사관후보생하고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상당히 차이 나는 것 알고 계시지요? 1년 반 그리고 3년 2개월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그렇습니다.

○서명옥 위원 정말 누가 봐도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시 말씀드리면 공보의·군의관 제도의 근본적인 제도 개편이 없다면 우리 국가안보하고 직결된 군의관 확보라든지 농어촌 등 취약지 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공보의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보공백은 물론이고 사회적 약자와 의료취약층의 의료안전망 봉괴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공보의 확보라든지 군의관 확보에 대해서는 국방부로 미루지 마시고 복지부는 국방부하고 하루빨리 신속하게 협의해 가지고 대안을 내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장관님, 수련 중인 전공의가 입영할 수 있도록 하는 군 휴직제도하고 의무사관 후보생과 일반 현역병과의 형평성 개선이 필요하고요. 또 희망자에 한해서 여성 공보의 모집 또한 저는 전향적으로 이 시점에 논의하여 가지고 군의관과 공보의 부족 문제를 미리 방지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장관님의 답변을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공보의와 일반 사병 간의 군대 복무기간 차이에 대해서는 저희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국방부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옥 위원** 예, 협의하고요. 국감 전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여성 공보의는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명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질의 이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요. 전공의들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수련 중단과 인력 손실도 상당합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에는 수련규칙상 출산휴가가 20일밖에 안 됩니다. 그마저도 1년 중에 연가·병가를 포함해서 30일이 초과하면 수련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들은 육아휴가를 거의 쓸 수가 없습니다. 또 여성의 경우에도 제도는 있지만 병원 현장과는 현실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또한 현실적으로 여성 전공의들도 육아휴직·출산휴가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합니다.

장관님께서도 학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녀 봐서 알지만 의과대학생 비율, 장관님 다닐 때는 몇 %였었나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한 10%.....

○**서명옥 위원** 그렇지요? 많아도 그 당시에 의과대학 10%입니다. 지금은 의과대학 숫자가 적게는 30%, 많게는 50%, 60%입니다. 아마 향후 의과대학의 여학생 비율은 이보다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들을 위한 임신·출산·육아휴직에 대한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제도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수련규칙 만드는 건 장관님이 만드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먼저 앞서 가지고 여성 전공의와 남성 전공의들의 이런 여러 가지, 임신과 출산, 육아휴직 제도를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위원님 질의 주신 것 관련해서 지역·필수 의료 분야의 복귀율은 저희도 우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계속 협의해서 지원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지역·필수 의료에 대해서 수가에 대한 보상이 되거나 아니면 법적인 안정성을 강화하는 그런 대책들이 근본적인 대책일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국정과제에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PA 간호사 관련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련 연속성 관련해서는 이미 군대에 가 있는 사직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귀 할 때 사후 정원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서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 특히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의 감소는 말씀드렸고요.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보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수련의 질에 대한 보장 확보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련협의체를 통해서 양쪽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어떻게 변경하면 될지를 논의해서 제도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옥 위원 그 부분은 수련협의체하고 논의될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궁극적으로는 재정이거든요. 그리고 병원에서 대체인력이 가장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을 검토해서야지 수련협의체하고 논의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민 다음은 전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광주 북구을 전진숙입니다.

장관님, 이재명 정부가 지난 7월 14일부터 국민 모두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한 것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전진숙 위원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되면서 참 행복한 얼굴을 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그게 지역의 골목경제를 살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취지에 무색하게 출생등록 절차의 제약으로 인해서 주민번호 발급을 받지 못했던 미혼부 자녀들은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지금 현재 배제된 사례가 있습니다. 혹시 이것 알고 계신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보도된 것을 보고 확인했습니다.

(박주민 위원장, 이수진 간사와 사회교대)

○전진숙 위원 좋습니다.

현행 제도에서 미혼부 자녀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엄마에 의해 출생등록이 바로 되는 것에 비해서 1년에서 최소 5년까지도 신고기간이 늦춰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출생등록이 늦어지다 보면 출산장려금 등 아동이 기본적 복지에서 소외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그렇고요 또 주민번호를 받지 못한 아이들은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라고 하는 것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혹시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한 3800건 정도 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진숙 위원 제가 자료를 봤더니 전산관리번호하고 주민번호하고 중복돼서 있는 아이들도 있기는 하는데요. 그러지 않고 지금 현재 10세 이하 아이들을 보면 전국에 491명이 이 번호에만 등록되어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민등록번호가 나와 있지 않아서 소비쿠폰을 받지 못한다는 아이들이 이 정도는 최소한 있다고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행복e음시스템에 등록된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와 연계해서 소비쿠폰이 우선 지급될 수 있도록 행안부하고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민번호가 없는 국민에게도 충분히 소비쿠폰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장관께서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전산관리번호로도 아마 양육사실확인서나 이런 서류들이 조

금 보완이 되면 지급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행안부랑 좀 더 긴밀히 협의해서 미지급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한 명의 아이들도 이번 대상에서 포기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짧게 하겠습니다.

지난 7월 29일 당정 회의에서 제가 1차관에게 요구했던 통합돌봄 제도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때도 말씀드렸고 아마 광주에 우리 장관님 오셨을 때도 제가 세 가지 관심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인력 확충 문제. 그리고 두 번째,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통합돌봄 모델 지원, 특히나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돌봄서비스를 할 수 있는 자율형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로는 기준에 보면 굉장히 분절적으로 제공됐던 복지서비스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인력을 포함해서.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한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할 뿐만 아니라 지역에 소위 말하는 커뮤니티케어센터 설치·운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전해들으셨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당정협의 할 때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받았습니다.

○전진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어떤 해결책을 바로 저한테 답을 주시기는 쉽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 이후에 서면보고를 별도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력 확충에 관한 문제는 당장 내년 3월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보사연을 통해서 연구용역 중이다라고 하는 답변을 받았고요, 인력 확충은 행안부하고 논의 중이다라고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재 보사연 연구되고 있는 것 맞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어느 정도 인력 추계는 돼서요 행안부하고 인력 협의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기준인건비에 대해서는 수요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아마 확정이 될 예정이고요, 내년도 인건비 확충하는 것도 기재부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전진숙 위원 상당히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맞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저희는 더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진숙 위원 예, 중간보고에 의하면 지금 7205명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걸 보고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추정이 그렇습니다.

○전진숙 위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통합돌봄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인력이 배치가 되고 그들이 활동을 했을 때만이 저는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중간에 계속 보고를, 중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돌봄이라고 하는, 통합돌봄의 핵심은 지역이 돌봄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자체가 어쨌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건데요. 그러면 지자체는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는가를 봤더니 지자체의 통합돌봄과 관련된 조례가 광역 단위는 10곳, 기초는 55곳이 현재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통합돌봄에 관련된 표준조례안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배포하신 적이 있으신가

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저희가 표준조례안 만들어서 이미 배포했고요.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전진숙 위원** 그래서 내년 3월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 또한 지역에서 관리가 조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통합돌봄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직뿐만 아니라 행정직도 마찬가지인데 이들에 대한 교육은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공급자 중심의 문제가 아니라 수요자 중심으로 전체 사고 전환이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 서비스는 저는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광주에서도 그 제안을 조금 드렸는데요.

통합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끌어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지역에서 통합돌봄 시대를 여는 어떤 선언이나 퍼포먼스 그리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이 사업 시행하는 데 시행 인력의 전문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교육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하고요. 인재개발원하고 기획해서 교육은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더 강화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선언과 같은 그런 행사를 저희가 어떻게 할지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검토를 해서 제게 따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전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수진** 전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이 한지아 위원님이랑 바꾸셨네요.

존경하는 김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위원** 정기석 이사장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예.

○**김선민 위원** 건강보험공단은 국가별 재정수지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그에 따라서 2017년에서 23년까지의 재정수지를 점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올해 초에 발표하셨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예.

○**김선민 위원** 그 점검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이 급여를 받고 있다라고 알려진 중국의 경우 건보 재정수지는 2020년 원래 239억 적자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점검 이후 오히려 365억 흑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려 604억 원이나 오류가 난 것입니다. 이사장님이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하신 2023년에도 중국에 대한 재정수지는 640억 적자라고 처음에는 알려졌지만 점검 결과 27억 원 적자로 613억 원이나 오류가 났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사장님께서도 잘 아시고 늘 강조하셨겠지만 통계는 정책의 기초입니다. 2020년 중국 인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200억 넘게 적자라고 했던 건강보험의 잘못된 통계는 당시에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후 2021년 국민의힘 의원님 몇 분이 피부양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십니다. 이 법안의 배경으로 건강보험공단의 잘못된 통계가 제시된 것입니다. 이후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는 중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자 문제를 지속적으로 거론했고 그 이후 2023년 12월에 외국인 피부양자에 대한 등록 요건 강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서 24년 4월부터 실시되어 왔습니다. 결국 건보공단의 잘못된 통계를 기초로 한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해서 실시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해외 주요국의 건강보험에서 사례를 찾기 힘든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법안까지 발의된 상황입니다.

통계 오류,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당시 공단의 해명이 더 기가 막혔습니다. 언론 기사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이번 통계 오류의 원인으로 대규모 세대교체를 지목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번 통계 사고는 젊은 직원들이 업무가 미숙해서 발생했다는 말씀인데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건보공단은 직원들이 계산기 두들겨서 통계를 냈습니까? 이런 해명대로라면 앞으로 건강보험공단 통계 부서에는 나이 많으신 1·2급으로만 채워 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장님은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 코로나대응특보를 맡으시면서 문재인 정부는 비과학적인 방역이라 하시면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통계 중심의 과학적 방역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통계를 중시하시는 이사장님이 취임하셨던 23년 통계 오류 액이 오시기 전 2020년보다 많습니다. 방역만 통계 중심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 중국 혐오, 외국인 멱튀, 건강보험 호구론 등 외국인 차별 논리를 뒷받침해 왔던 건보공단의 통계가 오류였다고 하니 앞으로 건보공단 자료를 국민이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장님 국민들께 사과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예, 빼아픈 지적 잘 새기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발표할 때 젊은 세대로 교체가 됐다는 부분은 정말 잘못된 해명이었습니다. 실태를 말씀드리자면……

○**김선민 위원** 나중에 다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예.

○**김선민 위원** 장관님, 지난 2020년 87조 원이던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가 지난해 116조 원을 넘겼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올 초에 공개된 건강보험공단의 연구보고서를 보면 지난 2010년부터 22년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총진료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입자 수와 고령화, 즉 제어하지 못할 요인과 함께 병상 수와 요양기관 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입원과 외래로 나누어서 지출 증가의 구조를 분석한 결과 입원 진료비의 경우 인구 1000명당 병상 수 1% 증가할 때 진료비가 약 0.21%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서 병상 공급이 비용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즉, 병상은 일단 만들어지면 채워지게 된다는 의료계의 속설을 증명해 준 것입니다. 외래 진료비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의원급 등 의료기관 수가 1% 많아질수록 외래 진료비는 약 1.64%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동네 의원이 늘면서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은 높아졌지만 이것이 전체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연구

결과를 통해서 고령화처럼 통제가 어려운 그런 요인 이외에 병상 수 그리고 의료기관 수와 같이 정책적으로 관리 가능한 공급 요인이 진료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우리의 의료 상황을 보면 2018년 대비 25년 1분기 전체 병상 수는 감소했지만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는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서 입원 진료비에 영향을 미치는 병상 관리계획은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외래 진료비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5000여 개나 증가를 했습니다. 또 의원급 의사들도 1만 3000여 명이나 증가를 했지만 아직 복지부의 어떤 자료를 살펴봐도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기전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계획을 세우실 생각이 있으신지 그리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장관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병상 수나 의료기관 증가에 따라서 의료비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종은 구조 전환 사업을 하고 있고 또 포괄 2차 종합병원에 대한 사업도 하고 있어서 병상에 대한 부분들과 또 병상 수에 대한 추계나 관리시스템은 어느 정도 조금 보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을 좀 보겠고요. 요양병원도 이제 간병비 급여화를 계기로 해서 요양병원에 대한 구조 전환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검토가 되고 있어서 어느 정도 병원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씩 관리 기전이 좀 생기고 있어서 모니터링하면서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의원급에 대해서는 현재는 신고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원급의 의료 공급에 대한 관리 기전이 현재는 없는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급여에 대한 심사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그 부분은 좀 더 검토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선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수진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한지아 위원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장관님, 작년 말 더불어민주당이 4조 1000억 원 규모의 초유의 감액 예산안을 밀어붙이면서 넥스트 팬데믹 1위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백신 예산 70 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번 정부 첫 추경에도 AI 인체감염 백신 30억 원, 두창백신 51억 증액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는데 미반영으로 끝났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지아 위원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보건안보와 연결된 사안인데 이런 게 발생하는 이유는 백신 확보를 위한 로드맵이 현재 부재하고 의약품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가 전략이 부재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약품 공급망의 중요한 지표가 되는 완제의약품, 원료의약품, 백신 자급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완제, 원료의약품에 대한 국산화가 상당히 낮고 중국 의존도

가 높다고 알고 있고요.

○한지아 위원 맞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백신은 한 40% 전후로 기억합니다.

○한지아 위원 완제의약품은 71.6%, 원료의약품은 25.6% 그리고 백신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원료의약품의 경우에는 의존도가 중국과 인도의 50% 이상으로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신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급률이 30% 정도밖에 되고 있지 않은데 국가필수예방접종 백신 40종 중 국내 생산이 불과 13종밖에 되지 않고 있고 2022년도 백신 무역수지 적자가 1조 원이 넘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필수의약품 공급, 즉 의약품 공급망에 대한 중요도가 대두되면서 국가 보건안보와 직결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전 세계적으로 다 동의를 할 겁니다.

의약품 공급망 강화를 위해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완제의약품, 원료의약품, 백신, 각각의 자급률 목표를 어느 정도로 두고 계십니까, 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지금 목표를 수치화하기는 좀 어렵고요 전반적으로 자급률을 높이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지아 위원 맞습니다. 자급률을 높여야 되고 그것에 대한 의약품 공급망에 대한 우리가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로드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시겠지만 바이든 대통령 취임 직후, 그때가 코로나 팬데믹 바로 직후였는데 거기서 제일 먼저 한 게 의약품 공급망 조사를 행정명령으로 지시를 했고 그거에 대한 취약성을 분석한 다음에 그거를 메꾸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는 우리나라로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의약품 공급 관리에 대한 데이터 수집 분석 체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완제의약품 위주의 수급 체계를 수급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원료의약품, API에 대한 공급 추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건 보건안보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EU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실시간에 준하는 그런 일일 보고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필수 중요 의약품에 대해서요. 우리는 없거든요. 조기 경보 시스템도 고도화됐습니다. 우리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목표를 갖고 잘 것인지, 의약품 공급망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는 어떻게 국가적으로 전략을 갖고 잘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지아 위원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WHO 조직개편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시겠지만 WHO 재정난으로 인해서 WHO 자체적으로 조직개편, 인원 감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HO 비용 절감을 위해서 스위스 본부의 일부 기능을 여러 국가들에 이제 조금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 전통의학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인도

총리가 WHO 사무총장을 만나서 전통의학은 우리 인도에 유치해야겠다라고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우리는 아시겠지만 WHO 의무 부담금 9위, 총기여금 기준은 12위 기여국입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원화로 한 약 1200억 원을 우리가 지금 현재 WHO에 기여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상징성도 있지요.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된 국가입니다. 그런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주 여건도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충북 오송은 보건의료 및 바이오산업 인프라를 갖고 있고 인천 송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WHO 기능을 이렇게 ‘거기서 우리에게 제안하면 하겠지’가 아니라 이런 기회에 적극적으로, 인도는 총리까지 나서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복지부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여금 내는 의무 분담금 순위보다도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직원, 그러니까 국민들이 WHO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한지아 위원 죄송합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중요하지만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WHO의 어떤 주요 기능을 한국에 유치하는 게 중요합니다. WHO 고베 센터 아시지 않습니까? 일본의 강점인 보편적 의료보장 UHC에 대한 부분, 고령화에 대한 부분, 본인들이 연구해서 그 결과를 개도국에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게 소프트 파워고 그게 보건 외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못 한다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는 그 역할을 안 하고 있다는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지적해 주신 인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최근에 WHO가 구조조정하는데 2명이 구조조정 대상이 될 거라는 얘기를 제가 전달 받았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총기여금 우리 12위입니다. 그런데 보면 WHO에서 판단하기로도 우리는 언더레프리젠티드(underrepresented), 그러니까 우리가 내는 돈에 비해서 우리 인력이 WHO에 반영이 안 된 거지요. 거기다가 고위직 같은 경우에는 8명에 불과합니다. WHO에서 P5 이상 인원이 1149명인데 우리는 0.69%에 불과합니다.

장관님, 우리가 이제부터는 WHO에, 그러니까 우리가 몇 명을 앞으로 늘릴 거고 P5는 언제, 내년에는 어느 정도 증액할 거고 우리가 목표로 그러면, 언더레프리젠티드 있기 때문에 최소한 적정 또는 오버레프리젠티드(overrepresent) 될 때까지 어떠한 전략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복지부에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WHO에서 우리 인력 깎는다고 하면 국회에서 예산 다 깎는다고 해 주세요. 자발적 기여금 안 주면 됩니다. 이 부분 복지부가 챙겨서 우리 직원들이, 우리 한국 인력이 WHO에서 잘 근무할 수 있도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WHO에서 글로벌 협력, 글로벌 보건

의 우리나라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기능도 강화해야 되겠고 근무인력도 강화하고 또 지위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 다 동의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략이나 계획을 수립해서 말씀드리고요.

한 2명 정도 구조조정한다는 보고를 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WHO PQ 관련된 전문인력이 해당돼서 저희가 주재관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달을 했고 기능은 유지하는 것으로 일단 결정했다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 부분 좀 더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아 위원** PQ의 분야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한지아 위원** 그런 기능을 만약에 구조조정해서 없애거나 축소한다면, 사실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전통의학 분야 같은 것을 인도 총리가 움직이는 것처럼 지금 새 정부 들어서서 못 할 이유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WHO 본부 기능 유치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 보시고 인력에 대한 것, 우리 대한민국 인력이 아주 활발하게 국제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전략과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수진** 한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방금 한지아 위원께서 질의하신 WHO 우리 인력 2명 구조조정은 그러면 복지부가 막는 것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WHO PQ의 포지션에 대한 기능은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는데 그 자리에 지금까지 일했던 분이 계속 일을 할 건가에 대해서는 조금 여지가 남아 있고 이분이 비정규직으로 매년 계약직 형태로 고용이 되어 있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수진** 그것 끝까지 잘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위원장대리 이수진** 다음은 존경하는 김남희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 위원** 광명을 김남희 위원입니다.

장관님, 이번 7월부터 아동 입양이 공공이 책임지고 수행하는 체계로 전환된다는 것 보고하셨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김남희 위원** 늦었지만 바람직한 변화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실종 아동이 해외 입양이 되는 등 민간기관에 의한 입양 절차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고 이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한 입양인들의 권리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입양인들의 뿌리를 찾기 위해서 필수적인 입양기록물 관리사업에 상당한 문제 가 있어서 지난 국정감사에서 저를 포함한 여러 위원님들이 입양기록물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셨고 그리고 MBC PD수첩에서 이와 관련돼서 해외입양아들이 피해 입은 사연을 소개하는 내용 방영한 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봤습니다.

○김남희 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지난 국정감사 이후에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을 비롯해서 8명의 직원이 배임과 직무유기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지난 입양기록 전산화 사업의 총체적 부실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인데 정계는 아직까지 단 한 명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에 복지부 감사 결과에서 책임자 정계를 요청했고 인사위원회가 열렸는데 3명은 퇴직, 3명은 징계 시효 초과, 나머지 2명은 징계가 면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입양기록물 관리 부실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것인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제가 징계위원회 결과는 확인하지 못해서요 추가적인 조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남희 위원 장관님, 지금 상황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부실에 책임 있는 사람이 혹시 여전히 입양 관련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지도 파악해 보시고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간사, 박주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입양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기존 입양기관과 시설 등에서 보관 중인 입양기록물 원문을 이관받는 기록관 건립 의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간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준비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준비가 상당히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지난 2023년에 보장원에서 1억 원을 들여서 진행한 기록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이 있었는데 사업이 지연됐고요. 지금 또다시 중복되는 연구를 2억 원이나 들여서 진행하는 내년도 예산이 제출됐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보고받았습니다.

○김남희 위원 2023년 연구용역 이후에 보장원에서는 기재부 소유의 유휴부지를 무상으로 받아서 기록관을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했었고 협의를 진행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됐으면 158억 원에 달하는 토지 구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였고 부지 확보 계획을 마련한 뒤 설계비 예산만 신청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보장원이 구체적인 부지 확보 방안을 제출하지 않아서 이게 이행이 안 됐고요.

그래서 결국 다시 처음부터 기록관 건립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을 들여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임시 서고 관련 추가 비용도 들어가고 용역이 끝나고 나서 설계비나 건립을 위한 본격적인 예산 확보가 2028년으로 4년이나 밀리게 됐어요. 그래서 완공은 2031년까지로 미뤄졌습니다.

더욱이 문제는 임시 서고 임대기간이 5년밖에 안 돼서 연구용역 2년, 건립기간 4년을 더하면 최소 6년이 소요될 예정인데 5년 후에는 창고를 비워야 하는 상황이라서 또 다시 국고를 낭비하게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것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말씀하신 대로 기록관 건립 일정이 좀 빨랐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국유지 확보하거나 이런 것들이 정부기관끼리 협의를 했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어서……

○**김남희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김남희 위원** 왜냐하면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제대로 추진이 안 돼서 자연되는 상황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점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올해 4월에 아동권리보장원 취임 2주년 인터뷰에서 보장원장님이 입양기록물 전수조사가 완료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의원실에서 조달청 용역사업 제안서를 확인해 보니까 기관 전수조사도 안 되어 있고 준비가 안 돼서 이관이 늦어져 가지고 지금 입양정보공개 서비스가 3개월이나 중단이 돼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입양물 관리사업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점검해도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은데 장관님께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은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서면이나 대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혹시 ‘가방 항암’이라는 말 들어 보셨어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언론을 통해서 들어 봤습니다.

○**김남희 위원** 암 환자들이 가방에 항암 치료제와 정맥 주입 기구를 챙겨 다니면서 직접 항암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해서 생겨난 말이고요.

왜 이런 말이 생겨났을까요? 윤석열 정권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그리고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 그리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 집단사직 때문이라고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의정 갈등 때문에……

○**김남희 위원** 지난 8월 7일 보건복지부는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등 의료계와 사직 전공의 복귀를 위한 논의를 했고요.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와 원래 자리를 보장해 줬고 국립대 전공의들에게는 수련을 마친 후 입대할 수 있는 배려까지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의료대란의 피해자는 전공의가 아니라 바로 국민입니다. 응급실 빽빽이, 진료 거부당한 환자들, 수술 놓쳐 사망한 국민과 그 가족들은 여전히 사과나 보상을 제대로 받지도 못했고요.

그런데 이런 의료대란 사태에 일정한 책임 있는 전공의들은 특혜를 받고 복귀한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여론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김남희 위원**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동안. 중증응급환자 적정 시간 내 의료기관 도착 현황 이런 것을 봐도 감소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응급이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공백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그런 제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남희 위원**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하시고 어떤 역할을 하시겠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런 의정 갈등이 생기지 않게끔 좀 더 의견수렴을 하고 대책을 만들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필수의료 분야가 공백이 생기지 않게끔 하는 법적인 근거나 제도적인 조치를 만드는 것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남희 위원** 그리고 전공의들이 병원에 복귀한다고 해도 의료현장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전공의 집단이탈 기간 동안 블랙리스트 만들고 신상을 털고 공격했던 사직 전공의들이 병원에 복귀하는데 사직하지 않았거나 조기에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한 보호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전공의의 오랜 빈자리를 메우고 환자 치료에 앞장섰던 진료지원간호사들과 업무 영역 구분 및 협업을 어떻게 이루어 낼지 이런 문제도 좀 걱정인데요. 혹시 이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PA 간호사하고의 업무분장에 대한 것은 현재 간호법 시행규칙 제정 과정에서 업무에 대한 내용들을 좀 규정하고요. 얼마 전에 통과된 업무조정위원회를 통해서도 업무조정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의들 간의 갈등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도 우려를 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수련병원협의회나 수련병원 중심으로 그런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병원별로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병원별로 병원장과 또 병원 전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남희 위원** 정부를 믿고 협조했던 사람들에 대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복귀 이후에 피해 상황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주민** 다음은 남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반갑습니다.

송파병의 남인순 위원입니다.

정은경 복지부장관님 또 오유경 식약처장님 또 임승관 질병청장님 또 산하 공공기관의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 국민께 약속한 공약과 새 정부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남인순 위원** 작년 2월 이후에 1년 6개월이 넘도록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심각 단계인 건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그렇습니다.

○**남인순 위원** 이게 언제 정도 해제될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하반기 전공의가 모집되고 병원 운영이 조금 더 정상화가 되면 위기 평가를 통해서 위기 단계 낮추는 것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남인순 위원** 올해 안에 그 부분은 시행이 되나요, 검토해서?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올해 안에 아마 단계를 낮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남인순 위원** 오늘 저희가 2024년도 결산을 하고 있는데요. 2024년 결산을 보면 그 당시에 어쨌든 비상진료체제 구축을 위해서 2024년도 본예산도 아니고 예비비로 해서 그때 막 돈을 평평 쓴 건 알고 계시지요? 그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한 3900억 정도 작년에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인순 위원** 집행했지요. 예비비로 막 했고, 지금 또 최근에 국회예정처에서 보고한 바에 따르면 비상진료체제 유지를 위해서 건보 재정 3조 원이 투입됐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정기석 이사장님, 이 얘기 들어 보셨지요? 3조 원 투입 맞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예.

○**남인순 위원** 그러면 이 3조 원 투입으로 인해서 이후에 건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그중의 절반은 저희가 선지급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 다시 회수하고 있고요. 1조 5000억은 말 그대로 사실은 지난해 응급진료, 중증진료에 투입이 됐습니다.

○**남인순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누적 준비금 소진 시기도 2년 빨라졌다 그런 얘기가 있고 또 당기 재정수지 적자도 더 빨리 전환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예측이 있거든요. 그 것 맞습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예, 그렇습니다.

○**남인순 위원** 그러면 이것에 어떻게 대비하실 건지 장관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건보 재정에서 한 1.5조 정도는 다시 상환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 한 1.5조 정도가 중증이나 응급진료 하는 데 사용이 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참고로……

○**남인순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국가의 재정이, 건보 재정도 사실은 국민이 낸 돈이고 여러 가지 국가가 세금을 쓰는 것도 국민이 다 낸 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돈을 이렇게 평평…… 어쨌든 상황 속에서, 재난 위기 속에서 한 건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장관님께서 청문회 과정에서, 이것이 사실 2000명이라고 하는 의대 증원을 무리하게 하면서 생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게 전반적으로 재정 사용과도 관련돼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때 김선민 위원이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조사를 해 보겠다고 그랬는데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인순 위원** 자체적인 조사는 안 하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상위기관인 감사원에서 종합적으로 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인순 위원** 감사원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아직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어서요 발표 시기나 이런 것은 감사원에 확인을 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반기……

○**남인순 위원** 감사원 결과를 보고 그 이후에 어쨌든 내부적으로 개선해야 될 점, 특히 재정과 관련한 문제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 복지부도 미리 고민을 좀 해 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의 방법의 하나로, 지금 건보 재정에 대해서 정부가 사실은 법정 지원 준수를 계속 안 했어요. 지금 법정 준수가 2024년에 14.4% 수준이거든요, 원래 20% 까지 해야 되는데. 이것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도적인 개선방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 보고한 바에 따르면 국고지원비를 늘리겠다라고 얘기는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제도화할 것인지? 이게 그냥 말로는 안 되거든요. 또 조금 있으면 일몰이 옵니다. 그러면 제도적으로 미리 해 놔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현재 법에는 14% 이내라고 되어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재정 상황 때문에 한 12% 좀 넘게밖에 지금은 지급을 못 하고 있어서요.

○**남인순 위원** 일반회계는 14%고 건강증진기금이 6%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 합쳐서 14.4%밖에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20%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17% 그다음에 건강증진기금에서 3% 이렇게 하는 부분으로 법안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계속 반복적으로 되고 그다음에 돈은 갖다 쓰고 채워지지는 않고 이런 문제가 반복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제도개선을 확실하게 추진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기금은 더 이상 확장성이 없어서 비율을 좀 낮추고 일반회계에 대한 부분들을 높이는 건 필요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하고 협의하고 주신 안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좀 해서 재정이 어떻게 변동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좀 살펴보고 검토하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장관님, 그동안의 과정을 죽 아마 복기해 보시면 재정 당국과 협의하면 들 안 됐습니다. 재정 당국은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재정이 원래 누적돼 있는 기금 소진 연도도 빨라지고 이런 여러 가지 예측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시기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적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신을 갖고 좀 추진해 주시고요.

작년에 저희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의료대란부터 계엄부터 여러 가지 일들을 겪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지난 정부에서 인구전략기획부로 만든다고 하면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예산을 0으로 했어요. 그건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에서 한 13억 쓰도록 했고 또 저희가 올해 1차 추경에서 약 한 49억 원 정도를 해서 합쳐서 64억 7000만 원 정도가 올해 예산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래 사실은 저출생 부분이 이번에, 사실 올해 반등의 여러 가지 조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꾸준하게 밀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원래 예산을 보통 한 120억

정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한 절반 정도 예산을 가지고 올해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 전 정부가 잘못했든 어쨌든 간에 새 정부가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긴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아마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새 정부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기능이나 역할을 강화하는 걸로 이미 국정과제를 세우고 있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서, 올해 당장 재정 확보에 대해서는 방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아마 추경이나 다른 이·전용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떤 방법이 있을지는 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그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민** 다음은 김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윤 위원** 장관님, 앞서 존경하는 김남희 위원님께서 가방 항암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의료대란에서의 환자들의 피해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는데요. 저희 의원실이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의료대란 초기 6개월 동안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초과 사망 환자가 약 300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14일 중증질환연합회를 비롯한 18개 환자·시민 단체들이 의료대란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없이 정부가 전공의·의대생 복귀를 추진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사실 의료대란으로 가장 큰 피해를 겪은 것이 환자분들인데 환자분들이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복귀에 왜 반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이 부족하고 특례로 복귀한다고 판단하셔서 그 부분을 지적하시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윤 위원** 그러면 사과와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이 먼저 있고 정부가 의대생·전공의의 복귀를 추진했다고 한다면 환자들과 시민들이 전공의의 복귀를 환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말씀하신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환자단체에 찾아가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 부족하다라고 계속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제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윤 위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전공의·의대생들이 국민과 환자들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하고 환자와 국민들은 이 의료대란의 과정에서 환자 곁을 지켜 준 의료진들에게 감사하고 또 잘못된 의료제도가 근본 원인이니 잘못된 의료제도를 고치는 데 환자와 국민들도 힘을 모으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사회적 화해·치유의 과정을 만드는 데 정부가 나서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을지는 방안을 좀 검토하겠습니다.

○**김윤 위원** 정부가 의료혁신위원회를 꾸린다고 하셨고 그 혁신위원회에 전공의·의대생, 환자·시민 단체들이 다 참여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혁신위원회에서 늦었지만 사회

적 화해와 치유의 장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김윤 위원 앞에서 의료대란 초과 사망 3000명 말씀을 드렸는데 향후에 이런 대규모 환자 피해를 막으려면 이번 의료대란의 과정에서 어떤 환자들이 어떻게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있어야 하고요. 이게 환자단체의 요구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료대란 환자 피해 실태조사법이라고 하는 법을 발의했는데 복지부가 신중검토 의견을 주셨습니다. 신중검토 의견은 보통 안 하시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거기에 무슨 의견을 주셨냐면 ‘피해조사는 법 개정 없이도 가능’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난 1년간 복지부가 체계적으로 환자 피해를 조사한 것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데, 법을 안 만들어도 알아서 하시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혹시 어떤 뜻으로 하신 이야기신지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재난에서의 피해조사가 재난안전법에 피해조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가지고도 피해조사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피해조사를 코로나 때도 저희가 코로나 피해조사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취약계층이 있고 어떻게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이해해야 재발 방지책을 만드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연구용역이나 이런 형태로 피해조사를 실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윤 위원 재난과 관련된 법에도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이번 의료대란과 같이 전국적으로 환자의 필수의료 서비스 제공이 중단된 사태와 같은 것들은 명확하게 재난의 형태에 맞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별도의 법 제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윤 위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장관님은 의대 정원만 늘리면 낙수 효과로 필수의료 분야의 부족한 의사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윤 위원 그래서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 그러니까 늘어난 의사를 부족한 곳에 보낼 수 있는 의료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겠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김윤 위원 그리고 의료개혁을 어떻게 하느냐가 필요한 의사 수의 수요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PA 간호사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양성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의사의 수요가 줄어들 수도 있고요. 비대면 진료를 의료취약지에서 얼마나 활성화하느냐에 따라서 의료취약지에 필요한 일차진료 의사 수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수급추계위원회는 의료개혁의 로드맵에 기반해서 수급 추계를 해야 되는데 수급추계위원회가 그렇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시기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 그려냐 하면 27년 정원은 내년도 4월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 되는데 의료개혁 로드맵을 저희는 연말까지 만드는 걸 목표로 하는데 조금의 시간적인 격차가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 위원** 상세한 계획은 아니더라도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에 대해서는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수급 추계를 하셔야 나중에 합리적인 추계도 가능하고 사회적 합의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계를 하려면 의료환경의 정책 변화나 의료제도에 대한 내용들을 검토해야 가능한 내용이기 때문에 시기를 좀 조정해서 최대한 그런 정책 여건이 반영될 수 있게끔 수급추계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민** 다음은 김예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예지 위원** 장관님, 아동학대 피해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2024년 건 제가 아직 못 받아 봤는데 2023년 기준으로 아동학대 건수가 2만 5000건, 약 2만 5000건이고 사망한 아동이 44명입니다. 특히 아동학대 행위자의 86%가 부모입니다. 굉장히 계속해서 줄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학대로 인해서, 결국에는 돌아가겠지만 당분간 원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아동들이 쉼터에서 보호를 받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래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보호쉼터, 학대쉼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대 예방, 재학대 방지, 학대피해아동 상담이나 보호를 하고 있는 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에 비해서 설치와 운영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제가 사실 지난해 결산 국회에서도 같은 질의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2024년 결산 내용을 보니까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 설치 목표가 10개소였는데 혹시 몇 개 되었는지 아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2개 정도…… 아, 24년에요?

○**김예지 위원** 예.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7개 정도 늘었습니다.

○**김예지 위원** 5개고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아동쉼터는 23년에 144개고 24년이 151개로 통계는 집계되어 있어서요.

○**김예지 위원** 목표치를 채우지 못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 결산 자료에 따르면 불용액이 굉장히 많아요. 절반이 불용되었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또한 28억 정도가 불용이 되었어요. 불용이 돼서……

지난해에도 사실 이 정도 불용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서 지난해 제가 이것 질의를 했더니 학대피해아동쉼터나 아보전 설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가 저조한 설치 단계와 위탁법인 및 부지 선정의 어려움 때문이라는 답변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개선을 하시겠다고, 조정하시겠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결과가 나와서 비슷한 질의를 또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장관님, 혹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을까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똑같은 답변을 드려서 송구합니다.

신규 설치 단가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한 6억 정도 되고 또 인건비 단가가 좀 낮기 때문에 아마 지역 수요가 부족한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예지 위원** 지역 편차도 굉장히 큰데 울산이나 광주 같은 경우는 2023년 이후에 아보전 2개, 쉼터 5개 거기서 멈춰서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울산은 23년에 일천삼백몇 건 정도 제 기억으로 그렇고 광주는 470건 정도인데,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 편차도 굉장히 심하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지역마다 이것이 이렇게 불용이 되는 이유 내지는 아보전이나 학대피해쉼터를 설치하기를 꺼려하는 이유들을 조금 살펴 주시고 내년에는 제가 같은 질의를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말씀하신 증가율이 둔한 시도에 대해서는 그 시도와 협의해서 사유가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지역 상황을 살피고 추가할 수 있는 방안을 자자체랑 협의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예지 위원** 협의하고 저에게도 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그러면겠습니다.

○**김예지 위원** 다음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내역사업이 있는데요. 24시간 그다음에 주간 개별, 주간 그룹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말씀을 왜 드렸느냐하면 이 지원사업 이용자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당사자의 만족도는 96%가 넘고 보호자 만족도는 93%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요. 그러면 이게 집행이 잘될 것 같지요. 그런데 24시간 개별 지원사업은 47.3% 그다음에 주간 개별은 44.2%, 주간 그룹은 약 12.8%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점점 내려오지요. 50%가 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24시간 경우에는 야간 돌봄인력 채용이 굉장히 힘들다고 하고 또 재가 제공기관의 지역 불균형 설치로 인해서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열세 번이나 공고를 냈는데 인력이 채용되지 못했다고 해요. 인력 채용에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제공 인력의 인건비는 원래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야 하지만 지자체 상황에 따라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사회복지 경력 인정 또한 80%밖에 인정되지 않아서, 100%가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잘 안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 없이는 또 이렇게 계속해서 불용이 될 것 같아요. 실집행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포기하는 상황이 없어졌으면 해서 저는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요.

2차 추경에서 사실 15만 원으로 올랐어요, 인건비가. 그런데 올랐다고 해서 제가 바로 이렇게 나아질 거라는, 물론 기대를 하고 싶지만 아직은 잘 모릅니다. 이게 나와 봐야 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고 이것도 해결해야 되지만 주간 그룹 지원 서비스와 주간 개인 지원 서비스 이게 인건비 단가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서비스의 실집행률이 다른 이유가, 하나는 사십사점 몇이고 하나는 십이점 몇인데 이게 사업 보조금 지원 방식이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주간 개별 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경상보조사업비 형태

로 지급이 되어서 별문제가 없는데 주간 그룹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바우처 형태의 수익금으로 운영되어서 최종증 발달장애인 이용자가 직접 서비스 이용기관에 가서 바우처 카드로 결제를 해야 되다 보니까 본인이 못 나가거나 부득이하게 사정이 있어서 결제를 바우처카드로 못 하면 또 이 특성상 갑자기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구인난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룹 지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 보건복지부가 당사자와 가족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최종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의 실집행률을 제고해서 계속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인력 확보를 위해서 서비스 제공 단가도 조정해야 될 것 같고 또 전문수당 지급 등 제도적 보완을 반영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동의하실까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실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력 확보가 제일 중요하고 말씀하신 수당이나 아니면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기준 준수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예지 위원** 혹시 계획을 세우셔서, 내년에 이것 또 계속 진행할 거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김예지 위원** 개선안이라든가 계획을 혹시 세우시면 저하고도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선정기준도 조금 완화해서 집행할 예정에 있고 말씀하신 서비스 제공기관이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김예지 위원** 인력, 인력.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그래서 인력 확보 방안에 대해서……

○**김예지 위원** 단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방안을 좀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예산 문제가 있어서 예산 협의 과정에서 반영시키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김예지 위원** 관련해서 또 이어지는 질문인데 장애인 자립 지원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2026년에 본사업으로 갈 텐데 이게 실집행률이 2022, 2023 계속해서 낮아요. 그래서 보면 보호자분께서 우려하셔서 안 된다, 전담인력—이것도 낮은 쳐우, 단가 문제지요—그리고 주택 공급 부족해서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저는 부처에서 들었어요. 그런데 원하시는 장애인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 또한 그냥 단순히 집행이 안 된다, 신청이 안 들어온다 그리고 주택이 없다라고 하시지 말고, 실제로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본인은 찾을 수가 없다 해 가지고 이미 LH공사에서 받아 놓은 집을 반납할 수밖에 없었던 사례도 있고 이미 주택은 있지만 취소할 뻔했던 사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겨우, 이제 재가 장애인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다행히 이게 괜찮아지고 있다고는 들었지만 아직 불용되는 부분들이 많을 거고 본사업이 굉장히 걱정이 돼요. 본사업은 안정적으로 실집행이 돼야 되잖아요, 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김예지 위원** 그래서 지자체와 그다음에 장애인 가족 그리고 장애인 본인 등 이렇게

알리는 일도 또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모범 사례들을 좀 발굴해서, 왜 안 되고 막 어렵고 이런 사례를 자꾸 말씀하시기보다는 모범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피플퍼스트나 이런 데서 당사자들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두려움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 홍보방안들,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는 시범이었지만 앞으로는 본사업이 많아요. 그래서 본사업에서 실집행률이 조금 더 올라서 좀 더 많은 장애인들이 자립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또 계획을 세우셔서, 그냥 안 된다, 어렵다 이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을 세우셔서 저희 의원실로 보고 부탁드려도 될까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개선방안들, 여러 가지 실행할 수 있는 조치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제대로 된 자립 지원 시범사업을 내년도에 하고 27년에 본사업 진행할 수 있게끔 계획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예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민** 다음은 백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백종현 위원** 백종현 위원입니다.

청장님,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면)

최근 들어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재유행은 올해 2월에 처음 검출된 XDV 계열 NB.1.8.1 변이 바이러스가 주도하고 있는데 이 바이러스는 감염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전파하는 무증상 감염 사례가 많고 전파력과 백신 회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질병청은 오는 10월부터 25~26절기 접종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정확히 10월 언제부터 몇 명을 대상으로 접종할 계획인지 그리고 비용이 얼마나 소요될 것인지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질병관리청장 임승관** 질병관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5~26절기 접종은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 약 1100만 명을 대상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10월 15일부터 75세 이상 고령층부터 순차적으로 5년 연령의 시차를 두고 시작하게 됩니다. 25~26절기 코로나19 백신 예산편성 금액은 2072억 원입니다.

○**백종현 위원** 청장님, 코로나19 재유행으로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고령자나 기저질환 등 곧 있을 고위험군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변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백신의 유효기간을 잘 파악하여 물량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질병관리청장 임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종현 위원** 또 다음 자료 보시면 코로나19 재유행처럼 신변종 호흡기 감염병을 예방하고 조기 감지 및 대응을 위해 감시체계를 강화해야 하지만 여전히 전체 일차의료기

관 대비 298개, 겨우 2.6%만 표본감시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질병관리청장 임승관 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백종현 위원 특히 경기가 72개소, 서울 69개소, 부산 21개소, 3개 지역이 전체 표본감시기관 298개소 중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지역별 모니터링 및 유의미한 통계 산출이 불가한 상태인데 본 위원이 이미 수차례에 걸쳐 표본감시기관 확대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그 지적 이유가 지역별 편중 문제 해소 차원인 줄 알고 계시지요?

○질병관리청장 임승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백종현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본감시기관은 여전히 기준 규모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역별 편중 문제도 전혀 해소되고 있지 않습니다.

청장님, 도대체 무엇이 문제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그 문제점이 예산입니까, 인력입니까, 아니면 제도 설계의 의지가 없는 것입니까?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질병관리청장 임승관 지금 지적 주신 사항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표본감시체계인데 인구 비례를 하다 보니, 전체적인 표본감시기관의 숫자가 적은 가운데 인구 비례성을 강조하다 보니 인구가 적은 시도의 그런 정확한 통계 산출이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300개……

죄송합니다. 현재 국내 전체 대상 의원급 의료기관 중에 2.6%가 참여하고 있는데 이게 인구 10만 명당 표본감시기관 수로 환산하면 약 0.6개소 정도 돼서 일본이나 유럽의 다른 국가들에 대비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저희 청은 현재의 인구 10만 명당 0.6개소를 약 1.5~2개소까지 확대 추진하는 것을 전략으로 세우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예산 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정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종현 위원 감염병 대응은 초기 모니터링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질병관리청장 임승관 예, 제일 중요한 사안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백종현 위원 청장님께서 현행 표본감시기관 운영의 한계와 또 자연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셔서 조속한 확대 로드맵과 지역 균형 배치계획을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장 임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현 위원 다음, 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백종현 위원 장관님, 업무보고 자료 보면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병원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병원 없는 곳에 신축하는 등 인프라 확충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맞습니다.

○백종현 위원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특·광역시 공공병원 비율입니다. 안타깝게도 부산의 공공의료기관 비율은 2.5%로 울산과 더불어 최하위 수준입니다.

다음 자료 보시면 부산은 특·광역시 중 처음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도시이며 2050년에 43.6%로 예상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최근 5년간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325명으로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장관님, 이 통계를 보면 많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부산의 건강지표가 다른 시도보다 조금 더 나쁜 걸로 보입니다.

○**백종현 위원** 공공병원은 최하위권이고 또 사망률 1위, 고령인구의 비율이 1위고 적어도 이런 곳에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는 병원을 만들어서 노인성 질환, 악성 신생물 사망률, 심장질환 사망률, 뇌혈관질환 사망률, 고의적 자해 사망률 데이터를 확보해서 분석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아마 지역별 건강 격차 부분과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분석하면서 그런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백종현 위원** 아급성기 병원에 대한 중요성이 커져 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장관님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아급성 병상이나 기능이 부족해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종현 위원** 건정심 최초로 안전이 상정되어 부산침례병원 부지에 복지부 제안으로 아급성기 병원 설립에 대한 논의가 소위에서 되고 있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건정심 소위에 건보공단의 연구 결과가 발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현 위원** 장관님, 지난 2024년 9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께서 10월 16일 재보궐선거 당시 금정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침례병원 공공화 약속을 최고위에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혹여 제가 정책 결정을 맡고 있었다면 당연히 침례병원을 살렸을 것이다’라고 하시면서 침례병원 정상화를 약속했는데 이런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그 내용까지는 제가 보고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백종현 위원** 위원장님, 30초만.....

○**위원장 박주민** 저희가 추가로 마이크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냥 하시면 됩니다.

○**백종현 위원** 공공병원 설립, 공공의료 강화에 대해서 많은 의지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백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주민** 다 되신 겁니까?

○**백종현 위원** 예.

○**위원장 박주민** 다음은 서미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미화 위원** 소리로 보는 시각장애인 서미화 위원입니다.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께서 취임하신 지 한 달 정도 되어 가는데요. 국민의 정책적 효능감을 위해서 이

른 아침부터 업무에 몰두하고 계시고 또 현장에 바쁘게 다니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장관께서는 후보자 시절에도 서비스 종합조사 개편을 위해서 TF 구성을 요구하면서 단식농성 중이었던 장애계를 만나서 요구안을 직접 받으셨고 인사청문회에서는 TF 구성을 검토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청문회가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난 8일 장애계도 농성을 해제하면서 장관님의 면담과 TF 구성을 기다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준비되고 있을까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현재 장애계의 요구사항을 검토 중에 있고요. TF는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하겠습니다.

○**서미화 위원** 면담도 검토하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서미화 위원** 제도개선이나 예산 소요 연구용역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애인 정책에 있어서는. 그런데 장애계 요구의 맥락과 배경을 장애인 정책에서 반영하고 또 수행 부처인 복지부가 그것을 인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장관님께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꼭 들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부가 지난 2019년에 장애인 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인 맞춤 지원과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겠다면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했었는데요. 그 이후 연차적으로 수요나 예산이 확대되어 왔습니다만 현장의 장애계와 당사자들은 숫자가 아니라는, 당신들은 숫자가 아니라는 외침과 함께 이 조사를 두고 제2의 등급제이자 장애인의 삶을 조각내는 인권침해라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PPT를 좀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지난 7월 중증장애인 네 분이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는데요. 인지와 신체 기능이 실제로 중증장애인인데도 어떤 분은 가족이 있다는 이유, 또 다른 장애인들은 유형에 따라서 인지 기능이나 신체 기능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점수가 깎여서 활동지원 서비스가 줄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장애 정책이 이현령비현령이라면서 결국 장애 당사자가 자신의 존엄까지 버려 가면서 최대한 무능함을 보여 줘야만 겨우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언제까지 구걸을 해야 되느냐며 원성이 높습니다. 장관께서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혹시 보고 받으신 적 있으실까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인권위 진정 제기 사례에 대해서 보고받았습니다.

○**서미화 위원** 사례뿐만 아니라 현장은 장애인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자기 자존심이나 존엄을 다 버리고 무능함을 증명하는 이런 구조로 지금 판정을 받고 있다는 점을 제가, 꼭 들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장관님, 조금 더 이 제도적인 상황을 들여다보면 모순점이 좀 있는데 가장 도움이 절실한 1구간조차도 월 480시간, 그러니까 1일 16시간밖에 지원받지 못하는데 이 구간에 해당하는 장애인들은 아주 최중증장애인이면서 독거 장애인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혹여라도 지원사가 부재한 시간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을 하면 상당한 위험을 겪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목숨이 위태로운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지원을 받

을 수 없는 그 8시간 동안 이분들은 사실 방치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행 제도가 당사자보다 정부가,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가 우선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각별히 살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조사의 신뢰성과 전문성도 비판을 받고 있는데, PPT를 보시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입니다. 2021년에 1453건이었는데 2024년에는 1798건, 23%가 증가를 했습니다. 올해에는 5월 달까지 이미 937건의 이의신청이 제출됐고요. 이 속도라면 전년도보다 올해는 더 많은 이의신청 건수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기간 이의신청 인용률은 약 50%거든요. 그래서 초기 조사에서 제대로 된 판정이 됐다면 절반이나 되는 장애인들이 구간 상향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겠지요, 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미화 위원 예, 그렇지요.

특히 이런 번복이 발생되는 것은 조사의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 다른 PPT 또 보시겠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지적을 했어요. 종합조사 업무를 하는 직원 절반이 관련 업무의 경력이 없고 주관성이나 재량을 통제할 근거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사원들이 현장에 가서 당사자를 만나면서도 조사표에 따라서 그냥 기계적으로 점수를 매기면서 장애 특성이나 현장의 장애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고려하지 않고 판정이 되기 때문에 결국 장애인들의 불만이 쌓이고 연금공단에서는 한 번 할 일을 두 번 이상 하게 되니까 직원들도 상당히 힘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라는 건데요. 그러면서 판정의 문제가 반복되고 계속 장애인들이 불신하고 직원들의 피로도까지 쌓여 가는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장관님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력이 없는 사람이 41%나 조사에 투입이 되면 아무래도 기계적으로 한다는 말씀이 맞을 것 같고요. 이런 신규자들에 대해서는 교육도 하지만 현장에 실제 조사 나갈 때 선임자들이 동행해서 같이 나가서 조사를 하면서 조사의 정확성이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들, 교육 강화하는 방안 등을 좀 더 강조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이의신청 관련해서 어떤 건들이 주로 이의신청에서 인용이 됐는지 유형을 분석해서 그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게끔 교육 내용이나 매뉴얼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미화 위원 또 어떤 분들은 거꾸로 본인부담금이 부담돼서 상위 구간에서 하향 조정되는 사례도 늘고 있거든요. 경제적 부담 때문에 국가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역설적인 상황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장애 당사자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본권이 보장되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의 활동지원 확대와 구간별 시간 확대, 본인부담금의 완전 폐지로 이어질 수 있기를 장애계가 요구하고 있거든요.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현재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서 본인부담률이 좀 달라지기는 하는데요. 비용 때문에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본인부담금을 현실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정책연구를 해서 분석을 하고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서미화 위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대선후보 시절에 장애인 당사자가 멋떳하고 동등

하게 권리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모두의 시선과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장애인을 더 이상 보호의 대상이 아닌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 보고 당사자의 참여로 장애인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장관께서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서미화 위원** 장관님께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리는 것은 서비스 종합조사 TF 구성과 장애계 면담을 서둘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주권정부에서는 행정의 논리보다 수요자의 목소리에 경청하고 그 목소리가 우선돼서 장애인들이 정책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PPT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에서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에 국립의대를 신설해서 인력을 양성하고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목표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반영돼서 전남도민들이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른 어떤 것보다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장관님께서도 염두에 두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저희가 계속 의료개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역·필수·공공 의료에서 일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맥락 속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미화 위원** 지난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가 출범했는데요. 수급추계위원회가 국가 단위와 지역 단위의 수급추계를 하기 때문에 전남에도 의대 정원이 배정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논의 중인 27년 의대 정원부터 전남 국립의대 정원이 배정되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장관님은 어떻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생각하고 계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수급추계위원회가 이제 1차 회의를 한 상황이어서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 또 필수과목별 필요한 의사 정원에 대한 것들을 추계를 하게 됩니다. 아마 전남 지역도 포함해서 추계를 할 예정이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의대 신설 계획에 대해서 교육부랑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미화 위원** 전남 국립의대 신설은 진짜 전남 지역 도민들의 30년 넘은 숙원 사업인데 대통령 국정과제에 포함된 만큼 장관님께서 이제는 속도를 좀 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민** 장관님, 의료인력 수급추계위가 이제 1차 회의 마쳤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위원장 박주민** 지금 전망하기에는 좀 이른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 구성이라든지 이

런 것들을 봤을 때 순조롭게 잘 운영이 될 것으로 보여지십니까? 어떻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저희가 어떻게 과학적 근거 기반의 추계를 할 건가에 대한 방법론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추계했던 내용들부터 살펴보면서 일정을 짜고 있어서요. 최대한 그 수급추계센터에서 만든 자료들과 또 거기 포함된 다른 여러 전문가들이 추계한 그런 자료들을 두루두루 살펴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민 예전에도 의료인력 수급 관련된 여러 가지 전망들을 각계각층에서 낼 때 보면 어떤 것들을 근거로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차이가 생기더라고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주민 그래서 논의 과정이 잘 이끌어지고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민 다음은 이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주영 위원 개혁신당 이주영입니다.

정은경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제가 업무보고를 듣다 보니까, 예전에도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업무보고의 구체성에 대해서 한번 당부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도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현안에 대한 파악이 과연 냉정한 현실 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는가 하는 걱정이 좀 돼서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오늘 업무보고하신 내용 중에 15페이지에 보시면 ‘2024년 수익률 15.3%, 수익금 160조 원 최고 성과 달성’ 이렇게 굉장히 큰 제목으로 돼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까지 국민연금 수익률 얼마인지 아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한 5% 안 되는……

○이주영 위원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6월 27일 공시하신 게 0.92%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8월 업무보고가 나올 때는 거기에 대한 언급이 적어도 들어가서 내년에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실 것인지, 그러면 그동안에 격차가 왜 난 것인지에 대한 냉정한 평가 혹은 대책이 들어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잘된 것처럼, 잘된 것만 써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른 영역에서도 똑같아요. 지금 이게 자체평가, 이건 국회에 내시는 거니까 어느 정도는 또 다 못 쓰시는 부분이 있다 치더라도 지금 제가 받아온 게 2024년 응급의료서비스 향상 및 인프라 강화, 보건복지부 내부 자체평가보고서인데 2024년의 응급의료서비스 향상 및 인프라 강화가 ‘매우 우수’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대책 마련하라고 했고 세 차례 발표했고 중증응급질환별 순환당직 실시하라고 했고 어린이병원, 소아전문응급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했다 이게 내용의 전부거든요.

그리고 평가 결과도 근거를 보면 전부 과제 적절성, 의견수렴 적절성, 특이사항 다 없다고 되어 있는데 현장에서 지금 상황이 좋지 않지요? 지금 보면 인구 10만의 밀양에서 마지막 응급실 운영 중단됐다, 언론 보도 보셨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알고 있습니다.

○이주영 위원 그리고 빅5 응급실은 지금 본원 폴로업 환자도 못 보는 상황인 것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현장 이탈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이제는 기사도 안 나는 정도의 상황인데 이걸 내부 보고서 자체평가를 매우 우수라고 이렇게 보고가 되면 과연 우수하지 않다고 평가하는 건 어떤 상황인가, 걱정이 많이 되실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나마라도 잘했다고 하신 내용을 보면 다 인프라 구축에 대한 내용인데 이건 사실 다 하라고 했다, 지침을 내렸다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영역이 추가적인 인력 유입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저희가 전공의 복귀율 현황을 받았더니 미복귀율이 높은 상위 10개 과에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흉부외과·응급의학과 다 들어가 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이주영 위원 소아청소년과는 거의 5% 정도밖에 복귀 안 한 걸로……

그런데 이 친구들은 지금 현 상황에서도 최근 3~4년 이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려고 했던 전공의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미복귀했고 이것도 사실 보건복지부는 미리 알고 있었지요? 6월, 7월에 이미 대전협에서 설문조사해서 복귀·미복귀 의향 조사했을 때 핵심의료과부터 더 안 하겠다는 게 칠십몇 % 이상 나왔던 것 알고 계셨지요?

그런데 지금 대책이 하나도 없고 오늘 주신 보건복지부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도 지금 의개특위가 국민참여 의료혁신위원회 출범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그리고 국민 중심 의료 개혁 추진 방안에 대한 연구 이번에 내신 것 봤는데 여기 형사처벌 연간 34건밖에 안 된다는 식으로 보도 여러 개가 쏟아져 나왔어요, 이 데이터를 보고.

그리고 제가 낸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또 신중검토로 내셨더라고요. 그런데 국회에서는 지금 응급환자는 무조건 우선 수용하라는 법안도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떠나 있는 전공의 혹은 현재 이 상황을 지켜보는 의대생들이 다음에 이 과를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세요? 이게 내용이 전혀 없어서 제가 직접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 답변하실 때 핵심의료에서 이탈하는 원인 중에, 가장 큰 것 두 가지 중에 급여에 대한 것과 하나는 또 사법 리스크를 직접 언급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필수의료 인력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구조적인 의료개혁이 이뤄지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사이에 어떤 단기적인 대책이라도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저희도 하고요.

그런데 조금 중장기적인 대책을 말하면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 보상을 100% 하는 걸 30년까지는 완수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 그런 계획이 하나가 있고.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좀 다양한 그런 대안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또 환자 측하고의 협의도 필요한 그런 상황이어서 좀 더……

○이주영 위원 지금 이 협의 때문에 진행이 안 돼서 지난번 소위에서도 신중검토로 주셨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이주영 위원 그런데 이것 이렇게 1년, 2년 가는 사이에 전국 모든 의국 공중분해 됩니다. 수련받아 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속도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주영 위원** 굉장히 전향적인 정부 측의 의지가 있지 않으면 이 부분은 사회적 합의만으로는 단시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해결책 혹은 정부의 의지가 분명한 메시지로 나오지 않으면 생각보다 이 의료기술의 명맥은 빨리 끊길 겁니다. 아마 그 위기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장관님 가정의학과 전문의시니까 당연히 의대 교육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해부학이라는 학문이 그 이후에 생리학·병리학 그리고 여기 청장님도 계시지만 내과학으로 연결되는 동안 그리고 나중에 신경외과 배우고 그러면 신경 해부도 따로 배우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이주영 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면 2025년 7월 8일 자로 해부교육 지원센터 공모 시작이 됐는데 지금 이게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현재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아직은 좀 진행이 더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영 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해부교육을 따로 떼서 시행한다는 것이 이론, 실습, 심지어 태깅(tagging) 시험 이런 것 보고 중간중간에 임상하면서 들어가야 되는 교육을 고려했을 때 과연 이게 진행을 하면서 보완할 수 있는 성격의 정책이라고 보시는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앞으로 의대교육에 관해서 또 들어난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지방에서 지금도 기초교육 할 교수가 없는 상황에서 각 학교에서 가지고 있어야 할 최소한의 기초교육의 역량을, 이 센터를 진행하는 것이 첫 번째는 지속가능한 교육의 방식인지, 두 번째는 이를 보건복지부에 문의를 했더니 단년도 예산사업인 데다가 지속성에 대해서 아직은 확실하게 확정된 바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올해에 발생하는 예산의 소요와 그래서 만약에 센터가 확충이 되거나 기자재가 들어갔을 때 그 이후에는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해결 방안이 있는지,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 급하게 해결할 게 아니라 충분한 논의를 거친 이후에 다시 시행을 검토해야 되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부학에 대한 교육과 실습이 의대 교육의 시작이어서 되게 중요성은 잘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해부교육 지원센터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한 기획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기획에 대한 내용이나 진행 상황을 한번 체점검해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파악을 하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주 세부적인 절차까지를 다 보고받지는 못해서요, 말씀하신 그 우려사항에 대해서 개선할 여지가 어떻게 있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민**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국민 비타민 서영석 위원입니다.

장관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새로운 정책을 잘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 2024년 결산심사를 하고 있는데 2024년을 돌아보면 윤석열·김건희 씨가 관여했던 특혜 논란이 있었던 사업이 참 많은 그런 해였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우선 제일 먼저 대표적인 김건희 예산이라고 얘기되는 게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인데 이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2023년 8월 21일에 국무회의에서 예타를 면제합니다. 그런데 예타를 면제하고 나서 국가재정법과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예타 면제를 했다 하더라도 적정성 검토 대상사업인데 이 적정성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24년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 집행을 강행하게 되는데 그런 절차의 문제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2025년 1월에 적정성 검토 결과를 발표하는데 그때 애초에 세웠던 6800억 규모의 예산의 한 42.5%나 72.8%에 불과할 정도로 보시는 바와 같이 2900억에서 4900억 정도로 적정하다 이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2024년 집행 내용도 보면 실집행률이 30%에 불과하고 실제 대상 인원도 8만 명을 예측했는데 12월 달 기준으로 4만 8000명 정도, 목표의 한 60%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연관되어 있는 정보화전략기획(ISP) 수립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것도 2023년 11월에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ISP 수립에 착수했는데 2024년에 이월되어 가지고 2024년 9월에야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에 기초해서 시스템 구축 계약이 2025년 2월에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특정인의 예산이었다 이렇게 얘기되고 결국은 짜맞추기식의 어떤 맞춤형 예산편성에 지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결국 예산편성 절차도 무시하고 과다 재정추계도 하고 예산의 기본적인 운용 기본원칙을 위반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한국형 ARPA 사업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프로세스를 진행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3년 8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예타를 면제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의 과정을 다 겪어요. 그래서 실제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2024년 4월에 적정성 검토 결과를 내는데 적정성 검토 결과 전에 이미 예산편성을 해 놓고 1월 달에 135억을 선집행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과다 추계되어서 57.6% 정도밖에는 필요한 수준이 아니다 이렇게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적정성 검토를 해 줍니다.

이렇게 편성 자체도 엉망이었고 실제 집행도 그렇고 사업 결과에 대한 성과 목표 또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 자체가 불가능한 이런 상황으로 진행이 됐다, 이 사업들이.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실제로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5월 달에 종합감사를 했는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ARPA 사업을 시행할 때 초기에 계획서가 부실했고 계약직 간부들의 영리 활동도 감독이 잘 안 이루어졌다 이렇게 종합감사를 합니다.

이게 2032년까지 1조 1000억 정도의 사업비를 들이는 막대한 예산인데 이렇게 관련 법과 지침을 위반한 것, 이건 어떤 형태든 점검하고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답변드릴까요?

○서영석 위원 예.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위원님 말씀하신 그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적정성 검토 등의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점은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절차 개선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만 마음투자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살예방이나 고위험군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 측면에서는 좀 더 예산에 대한 확보나 집행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에 대해서는 절차나 예산 추계에 대해서 문제가 없게끔 사업 관리를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RPA-H 같은 경우도 같은 절차에 대한 문제는 개선이 필요하고요. 말씀, 지적하셨던 영리 활동이나 계획서 기획에 대한 부분들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서영석 위원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제가 윤석열 정부 지난 3년을 돌아보면 그와 관련한 PCL 타액 자가진단 키트 논란이 있었고 그다음에 자생한방병원 천수근 특혜 논란이 있었고 의대 정원 2000 명 확대 결정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또 의정 갈등 과정에서 건보 재정을 무작위로 쓰거나 예비비를 사용한 것,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이 제대로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철저한 조사를 해 주시고 그 조사 결과를 의원실에 좀 보고해 주시고 복지부 자체적으로 안 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감사원 감사까지 요청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 의지가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말씀하신 사업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보고 판단하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서영석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아까 김남희 위원께서 지적이 있었는데 입양기록물 관련해서 본 위원이 고양에 있는 임시 서고를 방문하고 왔는데 여러 가지로 점검해야 될 부분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입양기록물 자체가 단순 기록물이 아니기 때문에 보관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우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보관 과정과 논의 체계를, 기록 연구자하고 입양인 당사자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논의 구조를 일단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게 당사자들의 요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사업도 아니기 때문에 시급하게 좀 이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논의 체계를 구성해 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임시 기록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록물 관리하고 있는 정부기관의 전문가의 자문을 좀 받아 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 문제가 없게끔 잘 관리하겠습니다. 입양 당사자들하고는 이미 저희가 간담회를 시작해서 협의체를 구성해 주셔서 진행 과정에 대해서 공유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영석 위원 예, 그렇게 하고 하여튼 기록관 설립에 대해서도 좀 속도를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다시 용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좀 더 구체적인 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용역 관리를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주민 다음은 김미애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부산 해운대을의 김미애입니다.

이달 초에 미국 보건복지부가 5억 달러, 우리 돈 약 7000억 규모의 mRNA 백신 개발 계획을 취소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질병청장은 보셨지요?

○질병관리청장 임승관 예, 보도를 본 바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영상자료를 보면)

지난 5월에도 모더나와 체결한 약 6억 달러, 우리 돈 8340억 원 규모의 mRNA 기반 조류인플루엔자 백신 개발 계획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장관은 이러한 결정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조치했다, 해당 백신이 코로나19나 독감 같은 호흡기 감염을 효과적으로 방어하지 못한다는 데이터에 따라 mRNA 백신 개발 투자를 종료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청장께서는 미국 복지부가 이 같은 결정을 한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병관리청장 임승관 타 국가의 보건정책, 백신 정책에 대해서 쉽게 평가하기는 여러 가지 제반 여건과 조건이 다를 것이라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국제적인, 학술적인 어떤 스탠더드하고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애 위원 mRNA 기반으로 한 코로나 백신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국민 절대다수가 접종을 했지요.

지난 5일에 질병청은 화이자·모더나 백신 합해서 530만 도즈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고 이 백신은 향후 우리 국민들에게 접종을 할 겁니다. 그렇지요?

○질병관리청장 임승관 예, 그렇습니다.

○김미애 위원 게다가 국산 mRNA 백신 개발을 위해 향후 5년간 민관이 5052억 원을 지원하는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 임상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질병관리청장 임승관 예, 맞습니다. 28년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청장은 다른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미국 정부의 검증을, 미국 정부의 결정을 검증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의아할 따름이고 또한 기사를 접한 많은 국민들도 같이 불안할 겁니다.

미국 내에서도 방금 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비판이 있다고 보도가 되는데 우리 정부의 입장은 변함없는 건지? 어떻습니까?

○질병관리청장 임승관 미국 정부의 백신 연구가.....

○김미애 위원 아니, 우리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까?

○질병관리청장 임승관 예, 우리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리고 mRNA 기술을 확보할 필요성은 여전히 유효한지 답변해 주십시오.

○질병관리청장 임승관 예, 여전히 유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미애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몹시 불안합니다.

하나 또 우리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초기로 돌아가 보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21년

2월 10일에 우리나라에서는 예외적으로 긴급 절차에 따라 승인이 이루어졌는데 당시에 미국은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던 중에 22년 11월 10일에 승인 신청을 철회했고 우리나라에서도 희귀 혈전증 발생 문제로 3세 미만은 접종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맞지요?

○질병관리청장 임승관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파악하고 계십니까?

○질병관리청장 임승관

○김미애 위원 파악하고 계세요?

○질병관리청장 임승관 예, 파악하고.....

○김미애 위원 최근에 판결문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긴급 승인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확신에 기초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백신 사용으로 인한 잠재적인 이점이 잠재적인 위험보다 크다는 국가적·사회적 필요성에 따라서 이루어졌다고 법원은 판시했는데 맞습니까?

○질병관리청장 임승관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긴급 승인이 이루어졌고 또 일정 대상은 제외도 시켰고 미국은 승인 신청 자체를 철회하고 했지요. 특히나 당시에도 많은 우려를 제기한 게 뭐냐면 일반 백신은 8년여 소요되는데 이 코로나19 백신은 1년 만에 이례적으로 승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의문을 가졌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국가적인 사회적 필요성에 따라서 국가를 믿고 접종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질병관리청장 임승관 예, 잘 듣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런데 정은경 장관님, 제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팬데믹 위기 상황이라는 상황하에서 좀 제한된 그런 정보를 가지고 접종에 대한 정책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한계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김미애 위원 그러니까 완벽한 게 아니라, 확신한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국가적·사회적 필요에 따라서 한 정책적 결정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이 하는 게 완벽할 수 없습니다.

21년 3월로 돌아가서 그때 질병청장 시절 기억을 회상해 보십시오. 제가 그래서 이상 반응 사이의 입증책임을 전환하거나 인과관계 추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끝까지 그 부분은 부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부작용 피해자들이 한 5년째 길에 있습니다. 물론 지난 4월에 국회가 특별법, 인과관계 추정 규정을 도입한 특별법을 제정했고 올 10월부터 시행되지만 여전히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도 사회적·정책적 필요에 의해서 긴급 승인이 이루어졌다면 국가 역시도 책임지는 자세로 인과관계 추정 규정만큼은 도입해야 된다. 그러면 빠르게 이것이 정리가 되었을 것이고 오랜 기간 동안 부작용을 입은 우리 국민들은 국가를 믿고 마냥 기다리면서 일상생활을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는 일은 없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신규 백신이다 보니까 인과관계를 확인하기가 어려웠던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미애 위원** 그러니까 정부가 그 부분에 자신이 없으면 추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이 도입된 거고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김미애 위원** 그리고 지금 시행령 제정 중에 있지요? 어떻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질병관리청장 임승관** 예.

○**김미애 위원** 어떤 과정입니까? 그러면 이 과정에서도 저는 부작용을 입은, 이상반응으로 부작용 입은 이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좀 들으셔야 됩니다. 장관님, 안 그렇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질병청하고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검토가 아니라…… 검토를 언제까지 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하위법령……

○**김미애 위원** 듣고…… 시행령 제정에 반드시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아시겠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당연히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또 입법예고 기간이나 이런 기간을 통해서도 의견수렴하고 그걸 반영한 하위법령 제정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청장 임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추가로 조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민** 다음은 이수진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성남 중원 돌봄정치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장관님, 지난 의료대란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생명과 건강을 잃었습니다. 다행히 새 정부 들어서 다양한 소통 끝에 의대생 복귀에 이어서 전공의도 복귀에 들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난 의료공백에 대해 의료계, 전공의단체가 환자와 국민께 사과의 뜻도 밝혔습니다. 그러나 피해를 입은 환자들과 국민들께는 여전히 많이 부족합니다. 모든 게 치유될 수는 없지만 정부는 하루빨리 의료공백을 없애고 다시는 의료대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부터 병원들마다 전공의 모집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달 29일까지 총 1만 3498명 모집 예정입니다. 이제 일주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현장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아직은 공모 마감 기간이 있어서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지원할지를 추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수진 위원** 복귀가 원활하게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아마도 지역이나 필수의료 분야가 좀 어려울 수는 있겠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수진 위원** 저도 필수의료·지역의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필수진료과목에 대한 복귀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장관께서 업무보고하실 때 지역의료·필수의료 수가 도입이 대책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쨌든 필수의료·지역의료 기관에 복귀가 잘되도록 더 세밀하게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그리고 전공의단체 등과 수련협의체를 진행하고 전공의 복귀방안을 논의하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2주 간격으로 회의하고 있습니다.

○**이수진 위원** 3차 수련협의체에서는 전공의 복귀 시에 사후 정원을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일단 복귀의 길은 열었다라고 보입니다. 근무시간 등 수련환경 개선과 수련 연속성 보장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21일에 4차 수련 협의체 열리는데 진전이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저희가 그동안에는 9월 하반기 모집에 대한 얘기를 중점적으로 했고요. 앞으로는 말씀하신 그런 수련환경 개선이나 수련의 연속성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수진 위원** 본연의 수련교육 취지를 넘어서는 주 80시간, 연속근무 36시간의 수련노동은 전공의의 노동인권과 건강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 질과 환자 안전 문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출산, 육아, 질병, 입영 등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수련 연속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과 삶의 기본적인 균형마저 포기하게 만드는 것도 큰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전공의는 의사로서 진료를 하는 의료 노동자이자 수련생이라는 이중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은 이번 전공의 복귀 문제를 떠나서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동의합니다.

그래서 지금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도 하고 있고 여러 법이 발의가 되어 있어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전공의들에 대한 수련체계를 강화하고 좀 더 질을 높이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진 위원** 내일로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수련병원협회도 동참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수련협의체 통해서도 의견을 모으고 또 소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국회 법안심사만 바라봐서는 안 되고요 수련협의체 논의도 계속 적극적으로 해 나가셔야 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이수진 위원** 전공의에 대한 수련체계가 본연의 수련 목적에 맞게 개선된다라면 수련 병원의 전문의 확충이라든지 대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미 현장에서는 전공의들이 수련 취지에 맞지 않은 일들을 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전공의, 전문의 그리고 전문간호사제도나 전담간호사제도 등 의료인력체계 전반의 체계를 다시 살펴보고 필요한 부분을 다시 설계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병원에서도 전문의 중심의 진료가 강화가 되고 있고 또 PA 제도가 들어오면서 조금 업무분장에 대한 내용들이 바뀌고 있어서 그런 환경 변화를 반영한 의료인력에 대한 운영체계 또 그리고 전공의들은 수련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그

런 체계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수진 위원 그런 시대 상황에 맞는 의료체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 고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근에 의정 갈등이 반복되면서 언제든지 의료대란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굉장히 큰 것 잘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이수진 위원 환자 안전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환자 기본법, 환자 안전법 그리고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필수의료 유지를 지킬 수 있는 필수의료 공백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 전부 제도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환자 안전을 위한 입법에 보건복지부장관께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입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장관님, 간호법 관련해서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규칙 곧 입법예고될 예정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입법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수진 위원 현재 규칙안 중에 전담간호사의 교육과정 운영기관 그리고 업무 범위가 마지막으로 큰 쟁점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이수진 위원 전담간호사 교육과정 운영에서 간호협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으로는 안 됩니다. 간호협회가 교육과정 운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이미 간호사 보수교육을 간호협회가 온전히 진행해 오고 있고 거기에 많은 기관과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이수진 위원 또 전담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전체적으로 동일 기준을 적용해야지 병원마다 이렇게 다르게 적용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많은 일을 시키고 싶을 거예요. 전담간호사에 대한 보상 규정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일만 시키는 구조가 되지 않도록 이게 마지막 단계니까 실국장 보고만 받지 마시고 현장 관계자들 만나서 의견수렴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현장 담당자들 간담회 해서 의견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의료행위에 대한 부분들이 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의협하고 간협이 같이 교육과정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것들을 초기에는 좀 세팅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요.

○이수진 위원 마지막……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의견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예, 만나서 의견수렴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이수진 위원 그다음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대상 전 국민 대비 90%인데요. 이게 공단……

공단 이사장님, 여기 공단 관련 업무가 폭증했어요. 기간제 상담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47명 인건비만 편성됐는데 실제로 기재부는 정부 정책 집행으로 인한 특별하게 인정되는 인건비에 한해서는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 시 제외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행안부도 공무원 초과수당 상한을 확대했어요. 이것 알고 계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예.

○**이수진 위원** 기재부와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총인건비에서 예외가 인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장관님, 건보공단과 같이 기재부와 적극적인 협의 해 주셔야 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이수진 위원** 일이 있는 걸 이미 여러 차례 경험을 했고 업무 폭증한 것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그대로 넘어가면 안 되니까 빠르게 협의하시고 제반사항은 저희의 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건보공단하고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민** 장관님, 저도 짧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도를 보니까 본인이 유방암이 걸렸다 이렇게 진단을 받아 가지고 절제 수술을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검체가 뒤바뀐 사안이었던 거예요. 즉 자신의 검체로 유방암 진단을 받았던 것이 아니었던 거지요.

그래서 사안이 매우 심각해 보이고 실제로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한 이 보도자료 보니까 담당하시는 국장님 워딩으로 중대한 사안이다, 더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워딩도 실려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겠지요. 다른 검체로 인해서 오진을 받고 유방에 대한 절제 수술을 받았으니까요. 그렇지요, 이 환자의 경우에는?

그래서 하여튼 이 국장님도 굉장히 위중한 사안으로 본다라고 보도자료를 내셨던 것 같은데 그런데 결과는 인증을 1개월간 취소하는 거였어요. 물론 이게 객관적으로 보면 어떻게 판단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 가벼운 것 아닌가라는 느낌과 함께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려면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좀 중하게 뭔가 처분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더 따지기보다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조금 보충설명드리면 인증을 한 달 정도 취소했다는 건 한 달간 그 기관에서는 검사 수가 청구를 못 하는 그런 경제적인 피해, 경제적인 부담을 안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50억 정도 추정하는 그런 수가 청구를 못 하는 폐널티를 적용했기 때문에 단순한 인증 취소는 아니고 이런 경제적인 부담을 주는 조치였다는 말씀 드리고요. 좀 더 제도적인 보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더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민 알겠습니다.

이제 2차 질의를 해야 되는데요. 2차 질의는 5분간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5분을 다 안 쓰시겠다는 분들이 다수시네요. 유일하게 한지아 위원님만 꽂꽃하게 나는 5분 다 쓰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한지아 위원님, 남인순 위원님, 백종현 위원님, 서미화 위원님 그리고 김미애 간사님 이렇게 2차 질의를 하시는데 남인순 위원님과 백종현 위원님은 1분씩만 하시겠다고 그랬고 서미화 위원님과 김미애 간사님은 3분 정도씩만 쓰시겠다고……

○서미화 위원 저도 5분 주세요.

○위원장 박주민 예, 서미화 위원님도 5분.

그러면 한지아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한지아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혹시나 오해가 있을까 봐 말씀드립니다.

질병청장님, 백신이라는 것은, mRNA 백신은 사실 학술적으로는 효과 있는 것으로 이미 다수의 논문들에서 나와 있는 거 맞지요?

○질병관리청장 임승관 예, 그렇습니다.

○한지아 위원 그렇기 때문에 미국 보건정책을 우리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의 국가정책은 최소한 그러한 과학적인 기반을 따를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맞지요?

○질병관리청장 임승관 예, 그렇습니다.

○한지아 위원 그리고 현재 mRNA는 차세대 백신 플랫폼 개선 고도화 연구에 있어서는 차세대 우리 국산 기술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예산 투여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맞습니까, 청장님?

○질병관리청장 임승관 예, 그렇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한지아 위원 그리고 그 당시 WHO에 제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 그렇기 때문에…… mRNA 백신이 개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래 걸리는 백신 개발에 대해서 우려가 있었지만, 모두 다 아시겠지만 보통은 백신 개발에 있어서는 임상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각 단계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1단계가 끝나면 그다음에 2단계, 2단계가 끝나면 3단계 이렇게 넘어갑니다. 하지만 코로나 당시에는 너무나도 여러 가지 위중한 상황이고 위급했기 때문에 국가, 전 세계가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1·2·3·4단계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절차도 생략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미국은 승인 안 했지만 영국은 승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신 우리가 들여온 건 WHO의 긴급 승인 절차를 거쳤고 사전적격성 심사를 글로벌 어드바이저리 커미티 온 백신 세이프티(Global Advisory Committee on Vaccine Safety)에서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 이유는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실까 봐 이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5분 안 걸리는데 이것 때문에 조금 더 걸릴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말씀 장관님께 여쭤봅니다.

메디스태프라는 커뮤니티 아시지요? 메디스태프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한지아 위원** 의대생만 가입할 수 있는 커뮤니티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벌어진 혐오와 폭력은 사실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최근까지도 복귀 의대생들을 겨냥해서 ‘돌아가면 성폭행하겠다’, ‘복귀하더라도 먼저 기어 들어간 감귤은 기수에서 열외시키겠다’.

김남희 위원님께서 가셨지만 그 전에 복귀한 우리 의대생들·전공의들에 대한 보호 절차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메디스태프의 대표·직원은 게시글의 작성자를 특정할 수 없게 의도적으로 보안 강화를 했고 현재로서는 블랙리스트 명단과 협박성 게시글 방조로 기동훈 메디스태프 대표와 관리 직원이 불구속 송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에 따르면 두나무에서 50억의 투자까지 메디스태프는 유치를 했더라고요. 윤리적으로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요즘에는 사실 기업들도 ESG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운영에 문제가 있는 데에 투자하는 건 적절하지는 않겠다고 생각합니다.

○**한지아 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이야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요. 장관님, 메디스태프 사태 언제든지 재발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복지부에서 이미 마련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잘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민** 너무 짧게 해 주시니까 제가 오히려 죄송하네요.

남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오유경 처장님, 지금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임신중지약물 도입이 포함된 건 알고 계시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예, 알고 있습니다.

○**남인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식약처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식약처는 지금 입법 공백이 보완되면 그 절차에 따라서 허가·심사 제도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남인순 위원** 지금 현대약품에서 작년 말에 심사·허가 또 제출했지요? 지금 세 번째하고 있지요, 현대약품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예, 그렇습니다. 심사 중입니다.

○**남인순 위원** 그런데 계속 지난번 정부하에서, 맨 처음에 사실은 이건 분명히 검토를 하겠다고 해서 시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입법 얘기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입법 공백이 6년이 지나면서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처장님이 정립이 안 되셨어요.

지금 국정과제로 나왔으니까 파악을 하셔 갖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약물 도입과 관련해서 빨리 추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영 준비가 안 되셨네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저는 이 부분은 법체계 안에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인순 위원** 아니, 현재도 이미 비범죄화가 됐잖아요.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계속 주무부처 처장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2021년 1월 1일부터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임신중지가.

그리고 이 약물에 대해서는 물론 법안은 제가 개정안을 내놨지만 법안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약품이 한번 들어와서 심사를 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허가를 받으려고 현대 약품에서 지금 신청을 했잖아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계속 이유를 정확하게 대지 않고 이것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만 하고 있는데 이제 절차를 진행하시라 이 얘기예요. 검토를 하시고. 너무 소극적이세요.

하실 얘기 없으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법체계 안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법체계가…… 비범죄화가 됐다고요, 법이 이미 헌법불합치에 의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그렇지만 헌법……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민** 별도로 보고를 좀 드려 주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주민** 다음은 백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백종현 위원** 장관님, 부산 침례병원 관련해서 행여 모르시거나 보고를 받지 않으셨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전직 장차관과 복지부도 손실보상 문제를 제외하고는 설립에 찬성하였는데 혹시 알고 계신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진행 상황은 보고를 받았고 아마 건정심 소위에서 계속 검토 중인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현 위원** 부산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지금 복지부하고 부산시가 계속 건정심 소위에서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 보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백종현 위원** 그리고 보험자병원 설립은 공공의료 강화라는 이 정부의 기조에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사업으로 보입니다.

장관님, 이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주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 부분은 아무래도 건보 재정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심의가 끝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좀 어렵다라는 양해 말씀 드립니다.

○**백종현 위원**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백종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민** 다음은 서미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미화 위원** 위원장님, 저는 3분이 5분인 것 아시지요?

○위원장 박주민 예, 그래서 5분입니다.

○서미화 위원 시작하겠습니다.

PPT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서울 강서구에서 시각장애인 노인들께서 경로당 설치를 요구하면서 농성을 이어 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다음 슬라이드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서미화 위원 예?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슬라이드가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서미화 위원 안 바뀌었습니까? 시간 좀……

죄송합니다. 좀 이따 다시 켜 주세요.

시각장애인 노인들이 지금 시각장애인 경로당 설치를 요구하면서 농성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분들은 외로움도 무섭지만 다른 노인들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외침이 매우 가슴이 아프거든요. 이분들은 현재 경로당에 가면 비장애인 어르신들의 도움에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또 시각장애인 노인뿐만 아니라 청각장애인 노인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미 지난 대선에서 장애계에서 농인 노인 경로당 설치를 요구한 바가 있거든요. 장관님께서 혹시 들어 보셨을까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요구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서미화 위원 알고 있으시지요?

PPT를 좀 보시겠습니다.

현재 관심 있는 지자체가 매우 극소수지만 시각·청각 장애인 경로당을 운영 중인데 전남의 경우에는 도 차원에서 농아노인복지센터를 순천, 광양, 나주 등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청각·시각 노인 장애인들이 사실 고령사회에서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장관님께서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관님, 지금 전국에 경로당이 6만 9000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청각이나 시각 노인들이 갈 수 있는 경로당은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 중에서 3.6%가 청각장애인 노인이시고요 1.5%는 시각장애인 노인이십니다. 사실 산술적으로라도 전국 경로당 6만 9000개 중에서 청각과 시각이라는 감각장애 특성을 고려한 청각·시각 노인 경로당이 인구 대비 3~5% 정도 운영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이 되실까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합니다.

○서미화 위원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장애 노인들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라도 시각·청각 노인 경로당 설치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장관님께서 계속 관심 갖고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기준 사례를 좀 살펴보고 수요자의 수요를 파악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 아시다시피 경로당 설치가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있어서 관계부처나 지자체하고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미화 위원 방안을 모색하셔서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고요. 저도 예산이나 입법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PPT 또 보시겠습니다.

제가 22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제안을 드렸던 1형 당뇨가 체장장애로 인정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곧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복지부로드맵대로라면 내년 5월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열여섯 번째 장애 유형으로 체장장애가 제도권과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끝까지 쟁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곧 입법예고를 진행할 예정이어서요 절차를 거쳐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미화 위원** 사실 주요국과 비교하면요 우리나라 장애 정책이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은데 대표적으로 척수장애의 경우에도 근력만 측정하면서 지체장애로 포함되고 있는데 척수장애는 배뇨·배변, 신경·호흡기 통증 등 복합장애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활동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해도 척수장애인들은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과 또 활동지원사들은 지원사대로 지체장애인으로 포함돼 있는 척수장애에 대해서 지원이 위험하고 어렵기 때문에 척수장애인들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다가 복지부에서 진행한 장애 인정 개선 연구용역에서 1형 당뇨 외에도 소화기, 파킨슨, HIV에 대한 장애 인정을 검토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행 장애 인정 기준이 매우 높고 당사자의 상황은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국민주권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서 당사자 중심의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현행 장애 인정체계의 맹점을 메울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도개선에 나서 주시고요. 당장 우선적으로는 척수장애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척수장애가 복합적인 그런 기능장애를 같이 갖고 있다는 특성을 고려해서 그 부분이 지금 장애 인정 기준에 반영되어 있는지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미화 위원** 그 점이 좀 안 돼 있거든요. 지체장애로 포함이, 통칭으로 돼 있어서 제가 각별히 말씀드린 겁니다. 각별히 검토해 주시고요. 의원실에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민** 다음으로 김미애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잠깐만요, 질병청장님이 안 보여 가지고 제가 아까부터 계속 살폈는데.....

○**질병관리청장 임승관** 여기 있습니다. 이쪽에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이제 보이네요.

○**위원장 박주민** 질병관리청장님이 숨으셨어요.

○ 김미애 위원 (웃음)

아까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예기치 않은 팬데믹 상황은 도래할 것이고 또 백신 접종률 제고를 위해서는 국가를 신뢰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 질병관리청장 임승관 예,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 김미애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러한 질의를 했던 것이고.

최근에 제가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대상을 남성까지 확대하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요지는 ‘사람 죽이는 살인 독백신을 강제 접종시키려 하느냐’ ‘제약사 로비 받았느냐’ 뭐 이런 건데 아마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한 수많은 부작용도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가 책임이라고 할 때 그 책임에 대해서 선언적 의미가 아니라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백신 도입 초기기에 인과관계 추정 규정만이라도 도입하라고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HPV 백신은 코로나19 백신과 다른 것이고 mRNA 기반도 아니고 또 2016년에 필수예방접종으로 들어왔고 접종 지원한 지 10년이 지났지요?

○ 질병관리청장 임승관 예, 맞습니다.

○ 김미애 위원 그리고 OECD 국가를 보면 34개 국가에서 이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 질병관리청장 임승관 예, 맞습니다.

○ 김미애 위원 그래서 남성까지도 확대할 필요성이 있고 그에 대한 데이터도 축적돼 있다고 저는 보도를 봤습니다. 맞습니까?

○ 질병관리청장 임승관 예, 그렇습니다.

○ 김미애 위원 그런데도 오해를 받는 대목 중의 하나가 이 백신이 글로벌 제약사의 독점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 협상에서도 불리하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낳기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래서 국민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하지 않도록 질병청이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병관리청장 임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미애 위원 잘 알려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식약처장님, 저는 아까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적절히 하셨다고 봅니다. 임신중지 약물 도입에 대해서 ‘허가가 있으면 허가 신청 시의 절차대로 진행하겠다’ ‘법체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것들이야말로 또 일부에서는 약물의 부작용, 약용 사례도 많이 보도되기 때문에 반드시 비교법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안전성에 대해서 국민적 신뢰를 얻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심사하고 있습니다.

○ 김미애 위원 그래서 적절한 답변을 하셨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주민 이제 진짜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장관님, 문신 관련돼서 많은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 사실 현재까지는 의료인이 아닌

비의료인이 하는 문신 행위는 다 불법으로 해서 처벌돼 왔는데 실제 상황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한 1300만 명 정도가 문신을 경험했다고 하고 30만 명 정도가 문신업에 종사한다고 하는 통계가 있을 정도입니다. 매우 일반화돼 있다는 얘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적절한 법적 규제의 틀 없이 관리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국민들 건강에도 위해가 끼쳐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법안소위에 문신사법이 상정됩니다. 아마 논의가 잘될 텐데, 복지부도 오래전부터 여러 단체의 의견을 조율하는 등 애를 많이 써 오셨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번에 소위에서 법안심사를 할 때 충실히 잘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무엇보다도 문신을 받는 국민들의 건강을 어떻게 보장하고 안전관리를 할 건가에 핵심을 두고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민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대체토론과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깊이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253항까지의 법률안과 청원은 소관 구분에 따라 해당 소위원회에 각각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결산 및 법안 등의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를 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김남희 위원님, 김미애 위원님, 김선민 위원님, 김윤 위원님, 김예지 위원님, 남인순 위원님, 백종현 위원님, 백혜련 위원님, 서명옥 위원님, 서미화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소병훈 위원님, 안상훈 위원님, 이수진 위원님, 이주영 위원님, 장종태 위원님, 전진숙 위원님, 최보윤 위원님, 한지아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서면질의에 대해서는 각 부처에서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8월 25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그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전부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정부 측 관계자 여러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 그리고 보좌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1분 산회)

소위원회 구성 명단

소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법안심사제1(13인)	강선우 김윤 남인순 백혜련 서영석	더불어민주당(8)

소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법안심사제2(11인)	이개호 이수진 전진숙	
	◎김미애 김예지 서명옥 안상훈	국민의 힘(4)
	김선민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예산결산심사(13인)	김남희 김윤 서미화 소병훈 ◎이수진 장종태	더불어민주당(6)
	김미애 백종현 최보윤 한지아	국민의 힘(4)
	이주영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김남희 김윤 서미화 ◎서영석 윤호중 이수진 장종태 전진숙	더불어민주당(8)
청원심사(3인)	김미애 김예지 서명옥 안상훈	국민의 힘(4)
	이주영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남인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2)
	◎백종현	국민의 힘(1)

소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의료개혁(10인)	김 윤 ◎박주민 백혜련 이수진	더불어민주당(4)
	김미애 김예지 안상훈 최보윤	국민의 힘(4)
	이주영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표시는 소위원장임

○출석 위원(21인)

권성동 김남희 김미애 김선민 김예지 김 윤 남인순 박주민 백종현 백혜련
 서명옥 서미화 서영석 소병훈 안상훈 이수진 이주영 장종태 전진숙 최보윤
 한지아

○출장 위원(1인)

이개호

○첨가 위원(2인)

강선우 윤호중

○위원 아닌 출석 의원(3인)

김성희 백선희 정춘생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전문위원 정경윤

전문위원 오세일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제1차관 이스란

제2차관 이형훈

대변인 정호원

기획조정실장 김혜진

사회복지정책실장직무대리 배경택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은성호

보건의료정책실장 정윤순

의료개혁추진단장 정경실

정책기획관 임호근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오유경

기획조정관 우영택

식품안전정책국국장 김성곤

의약품안전국국장 김상봉

질병관리청

청장 임승관

차장 임숙영

기획조정관 이상진

감염병위기관리국국장 조경숙

의료안전예방국국장 손영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정기석

기획조정실장 신건홍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태현

기금이사 서원주

기획조정실장 이기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강중구

기획조정실장 김산

【보고사항】

○ 의안 회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18. 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5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18. 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60)

이상 2건 7월 21일 회부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2.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30)

7월 23일 회부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3.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5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3.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5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3. 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68)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3.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69)

출산지원대출에 관한 법률안

(2025. 7. 23.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81)

이상 5건 7월 24일 회부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4. 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0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4. 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0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4. 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11)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4. 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14)

이상 4건 7월 25일 회부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5.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3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5. 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58)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5. 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64)

이상 3건 7월 28일 회부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8.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2)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8.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94)

이상 2건 7월 29일 회부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9. 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9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9. 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9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9.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0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9.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22)

아동건강기본법안

(2025. 7. 29. 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28)

이상 5건 7월 30일 회부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30. 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32)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30.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3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30. 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5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30. 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54)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30. 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6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30. 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62)

이상 6건 7월 31일 회부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31.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6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31.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67)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31. 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68)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31.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79)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31. 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9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31. 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04)

이상 6건 8월 1일 회부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08)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안

(2025. 8. 1.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1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 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2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45)

이상 4건 8월 4일 회부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4.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60)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4. 백종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63)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4.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69)

이상 3건 8월 5일 회부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5. 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7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5. 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9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5.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9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5. 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9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5. 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98)

이상 5건 8월 6일 회부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6. 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0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6. 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0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6. 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12)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6. 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22)

이상 4건 8월 7일 회부됨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7. 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45)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7.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49)

이상 2건 8월 8일 회부됨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8.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72)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8.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77)

이상 2건 8월 11일 회부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1. 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85)

8월 12일 회부됨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3. 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4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3. 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52)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3. 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1)

이상 3건 8월 14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17.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32)

7월 18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2025. 7. 21.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93)

7월 2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3.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83)

7월 2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4. 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12)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4. 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13)

이상 2건 7월 25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 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09)

8월 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

(2025. 7. 22. 노석준 외 54,122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05)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2025. 8. 4. 어기구 의원·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58)

이상 2건 8월 5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2027 제41차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

(2025. 8. 8. 최형두 의원·박수현 의원·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68)

8월 1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예비심사기간 통보

2024회계연도 결산

(2025. 5. 30.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635)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5. 5. 30.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636)

이상 2건 7월 23일 의장으로부터 예비심사기간이 8월 25일 09시 30분까지로 확정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음

○행정입법 제출

구분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훈령	예규	고시
보건복지부	1	-	1	-	-	6
식품의약품안전처	1	2	-	1	-	1
질병관리청	-	-	-	-	-	1